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754-10

2017년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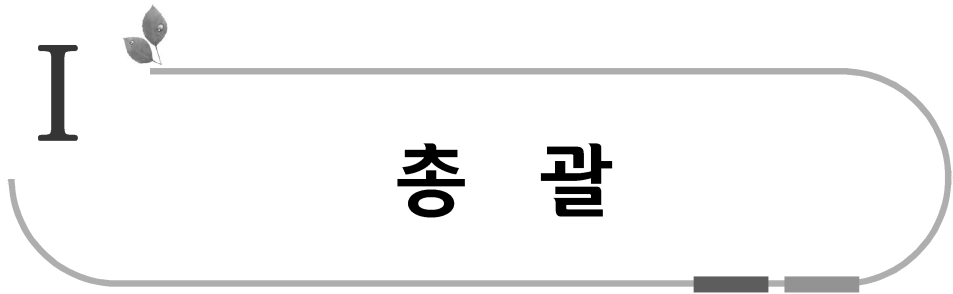
2017. 2.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목 차

I . 총괄	1
1. 사업주관기관	3
2. 근거법령	4
3. 성과지표	5
4. 기타	5
II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7
<한우개량>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13
2. 한우암소검정사업	40
3. 한우육종농가사업	62
4.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79
5.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94
<젖소개량>	
6. 젖소(씨수소)개량사업 지원	117
7. 유우균능력검정사업	126
8. 젖소육종농가사업	143
<돼지개량>	
9. 종돈농장검정사업	159
10.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169
<공통>	
11. 종축등록사업(한우선형심사)	201
12. 가축개량기술교육	208
<기타가축개량>	
13. 신품종 별 보급용 별통지원사업	216



I. 총괄

1.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비고
	기관명(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1. 한우(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서산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서산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서산
4.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90	부장 임연수	서산
5.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축산경영부)	02-2080-6553	팀장 박철진	서울
6. 젃소(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젃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종현	고양
7.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젃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종현	고양
8. 젃소육종농가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젃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종현	고양
9.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성수	서울
10.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10	과장 김시동	성환
11. 닭경제능력검정소 신축지원	대한양계협회	02-588-7651	과장 이종웅	해남
12. 신제품 별 보급용 별통지원	지자체 축산과 (농식품부)	044-201-2343	주무관 김태영	세종
13. 종축등록사업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유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정용호 부장 정승곤	서울
14. 가축개량기술교육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서산

2. 근거법령(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3.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17			
젓소산유량 (kg/두/년)	8,723	8,959	9,103	9,142	9,035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결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 기준 산유량을 추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측정	농협(젓소개량사업소) 검정자료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전체)	61.3	65.0	67.9	69.3	68.7	- 한우암소검정사업 및 한우능력검정사업을 토대로 기준년도 근내지방도 및 1등급이상 출현율을 근거로 산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1등급이상 한우 두수 / 한우 등급판정 두수 × 100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돼지산자수 (두)	11.4	11.5	11.6	11.8	11.6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의한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의 검정성적을 기준으로 기준년도 산자수로 산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 검정성적 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자료

4. 기타

□ 자금배정·집행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지침해석

- 사업지침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3)

II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II.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주관	'16년도		'17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I. 한우 개량			50,283		38,119	
1. 한우(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26,275	1개소	21,118	고능력암소 축군조성 희소한우 개량지원
	지자체	4개소	800	4개소	200	
	지자체	-	-	3개소	90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 협	8.5천호 (60개소)	3,903	8.5천호 (60개소)	3,375	관리두수 200천두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 협	106호	2,725	104호	2,785	
	지자체	3개소	150	2개소	120	
4.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농 협	1개소	(346)	1개소	(400)	한우(씨수소)
	지자체	8개소	1,431	9개소	1,431	개량사업 포함
5.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농협	3개소	15,000	3개소	9,000	용자 사업
II. 젓소 개량			10,926		10,910	
1. 젓소(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8,738	1개소	8,831	
2.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 협	110천두	2,188	110천두	2,079	
3. 젓소육종농가	농 협	16호	(1,687)	16호	(2,461)	젓소(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III. 돼지 개량			1,803		1,903	
1. (가칭)미래한돈창조 혁신센터 신축지원	한돈협	-	-	1개소	400	별도 시행
2. 종돈농장검정	종개협	60천두	200	60천두	200	
3.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축산원	-	1,431	-	1,053	
(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지자체	10개소	(250)	10개소	(250)	
IV. 가금류 개량			500		1,000	
1. 가금류 종축검정 등 개량시설 설치지원	양계협회	1개소	500	1개소	1,000	별도 시행
V. 기타가축개량지원			400		150	
1. 신품종별별통지원사업	지자체	13개소	150	13개소	150	
2. 토종별종보전사업	지자체	8개소	250	-	-	사업 종료
VI. 공동사업			354		355	
1. 종축등록(선형심사)	종개협	50천두	150	50천두	150	
2. 가축개량기술교육	축산원	9개 과정	180	9개 과정	175	20% 자담
3. 능력평가대회(한우/젓소)	종개협	1회	24	1회	30	별도 시행
합 계			64,266		52,437	

한 우 개 량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더욱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능력을 향상
- FTA 확대 등 대외변화에 대응하여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8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7,411	29,461	27,705	22,548	
- 보조	24,755	27,354	26,275	21,118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2,656	2,107	1,430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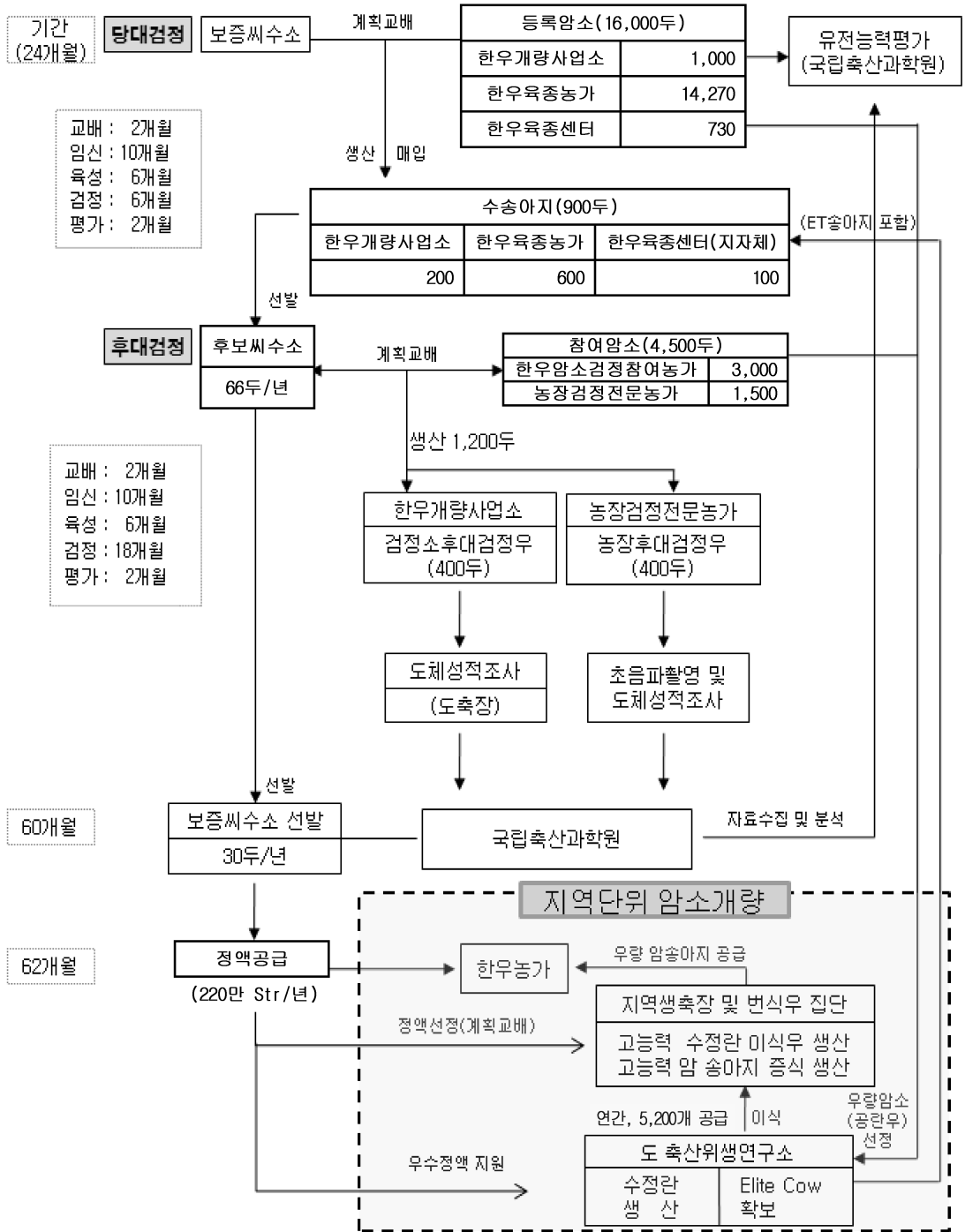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임

* '17년도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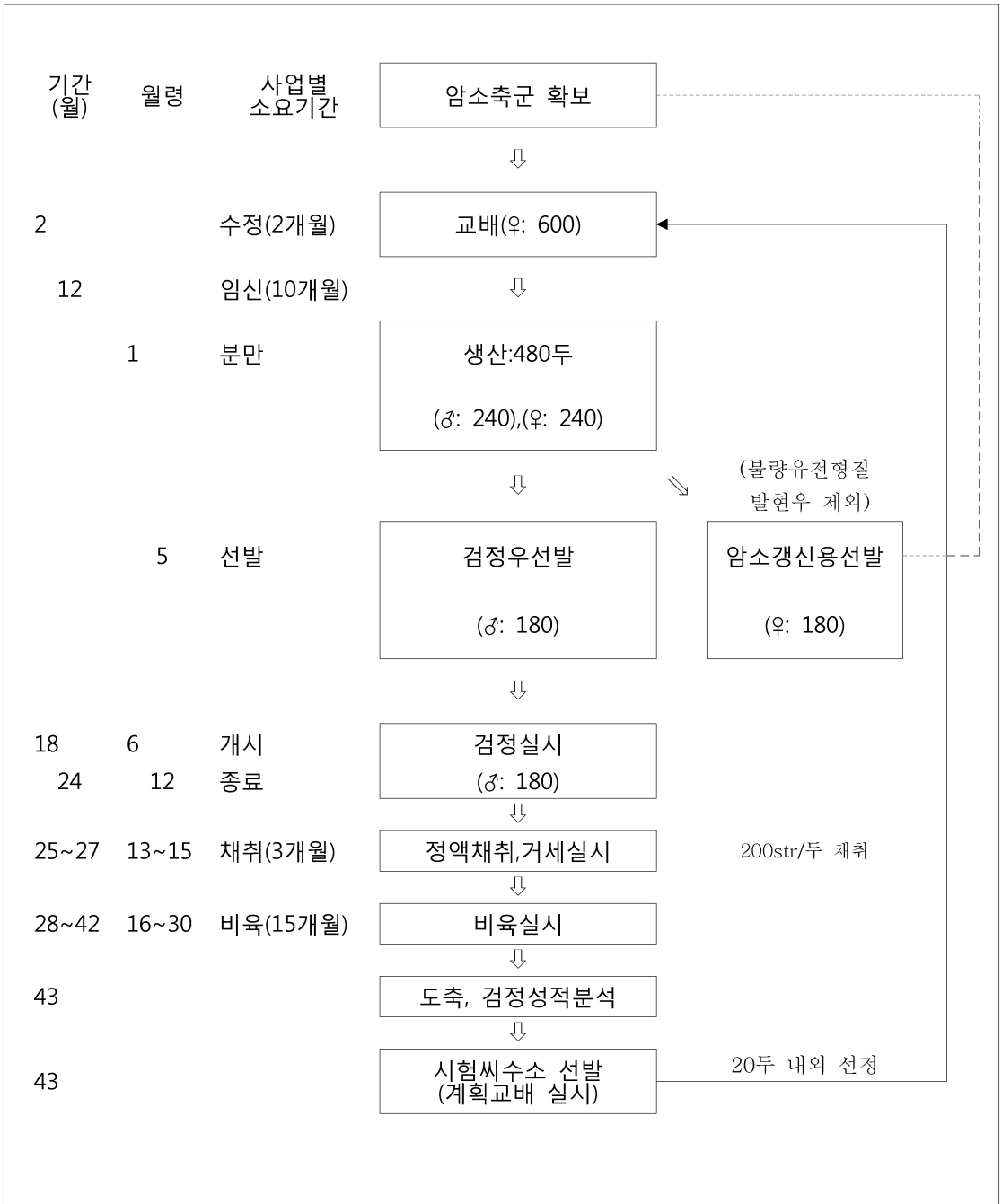
마. 사업추진체계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



* 당대·후대검정우, 보증·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업무흐름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요건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공급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 * 당·후대 검정우 매입 및 농가를 지원하는 검정자료 조사비 포함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 정액 보조

사업 내용

< 당대검정 >

- 계획교배로 생산된 당대검정우를 검정하여 후보씨수소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 한우육종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직접 당대검정 실시 가능
- 검정두수 : 당대검정 900두 내외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800두, 한우육종센터 100두

○ 당대검정우 확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자체 생산 및 한우 육종농가에서 매입

- 보증씨수소 및 씨암소의 유전능력과 유전적 근친도를 고려하여 확보
- 검정우 매입 : 등록우 경매시장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 전국 경매시장 중 25두 이상 출품 지역의 평균시세를 기준
 - ** 당대검정우 매입 시 확보두수가 부족하더라도 가축질병, 혈통정보의 정확성을 고려 일반농가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대검정 실시
-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당대검정 매입 대상우 선정 시범실시
 - * 한우육종농가 생산 수송아지('17년 상반기 계절번식 분만우)에 대해 유전체 육종가를 바탕으로 당대검정 매입 대상우 선정 시범실시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연구기관)는 자체 생산한 송아지로 당대검정우를 선정하고, 직접 당대검정 추진

○ 후보씨수소 선발 : 연간 66두 내외

-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개량사업소가 제공한 당대검정 성적을 분석(유전능력평가)하고,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를 선발
 - * 한우육종센터는 검정완료 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하고,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이를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한우육종센터가 생산·검정한 당대검정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해당 소를 매입(산지평균시세의 130% 이내)
- 선발지수 가중치 : 12개월령 체중(1) + 근내지방도(1)

< 후대검정 >

-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계획교배하고, 생산된 자손(후대)의 능력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를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검정소 후대검정*과 농장 후대검정**을 병행하여 실시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검정기관이 매입하여 검정소에서 18개월간 동일 조건으로 사육하면서 검정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생산한 농장이 직접 사육하는 상태에서 체중조사와 초음파촬영(24개월령)을 실시

○ 검정목표 : 800두 내외(검정소 400두, 농장 400두)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 대상축) 확보

- 검정소 후대검정우

· 검정기관은 사전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정액사용 및 후대검정우 생산 신청을 받아 50개소 (암소 기준 3,000두) 내외를 선정

· 사업참여 조합(소속농가)의 암소별로 후보씨수소 계획교배를 실시 하고 생산된 수송아지를 검정우로 매입

* 도별 일반시장 평균시세의 130% 이내에서 매입하고, 도별 일반시장 평균 시세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평균시세의 130% 이내로 매입

- 농장 후대검정우

·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혹은 한우육종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장 후대검정 참여농가를 선정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해당 농가 에서 사육(검정소후대검정 시기와 동일)

* 농장후대검정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검정자료 제공시 자료조사비 지급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후대검정 실시

- 월령별 체중측정, 사료섭취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도체성적 조사

- 후대검정우 도체성적 조사는 도체의 등급판정 항목별 성적을 활용하고 검정소후대검정은 부위별 수율조사 실시

○ 보증 씨수소 선발 : 연간 30두 내외

- 선발지수 가중치 : 도체중(1), 등심단면적(1), 등지방두께(-1), 근내지방도(6)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운영 >

-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농가를 선정하여 농장 후대검정 실시
-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40호 내외로 유지하고 교배 및 검정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
 - 12개월령 이상인 혈통등록 이상 교배대상 암소를 연간 호당 40두 이상 선정하고,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계획교배 실시(교배기간 : 1~2월, 7~8월)
 - 검정방법은 가축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
- 신규 전문농가는 검정자료 조사를 위한 우형기(보정틀 및 유도로 포함) 설치 시 최대 8,200천원/호 지원
- 농장후대검정 참여로 생산된 수송아지의 이유자료(생시·이유 혹은 3개월령 체중) 조사·제출 시 100천원/두, 발육자료 조사·제출 시(6·12·18·24개월령 체중측정 및 24개월령 초음파 촬영) 400천원/두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실시

[2017년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선정계획]

구분	2013~2016	2017 ^{주1)}	누 계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39	5	44

주) 2017년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사업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5호 내외로 신규 선정하여 운용 추진

< 정액생산 및 공급 >

-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매월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생산·공급
 - 정액 생산·공급용 후보·보증씨수소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급된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 (이모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 방지

< 기 타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검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한우 정액공급 실적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친자감정용 유전자 마커를 검사하여 공개
- 한우육종센터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검정방법, 생산된 자료의 수집·평가방법 등을 국립축산과학원과 사전 협의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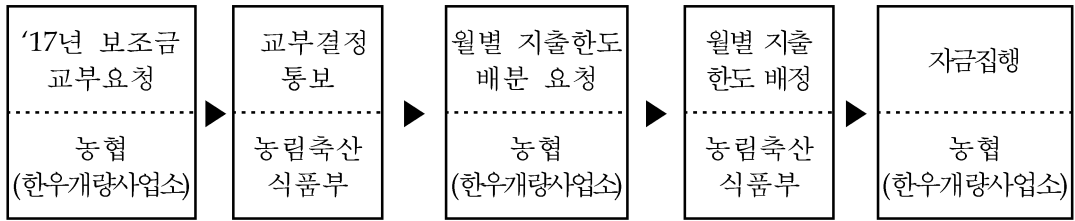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당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600두	3,300x1.3	2,574
후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400두	3,000x1.3	1,560
후보씨수소 매입비	12두	4,000x1.3	62
한우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공란우)	4두	8,000x1.3	42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농가 서비스 강화
 - 지역별 사육두수,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해 투명한 정액 공급체계 구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능력검정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17년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1>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② 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구성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도 축산관련연구기관('15~'16 선정)

지원요건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이들 암소를 속성 개량하여 단기간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17) : 고능력암소 사양비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 정액 보조

사업 내용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이들 암소를 속성 개량하여 단기간에 고능력 축군 조성

-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씨수소의 경제형질 유전능력을 암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 동안 반복하여 단기간에 암소의 유전능력을 향상
- 사업종료 후 조성된 고능력 암소축군은 후보씨수소 생산을 위한 육종용 암소집단으로 사용

○ 암소 축군 규모 : 600두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4개소)
- 농협 : 200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400두

* 지차체는 4개소×100두로 조성(세부적인 두수는 참여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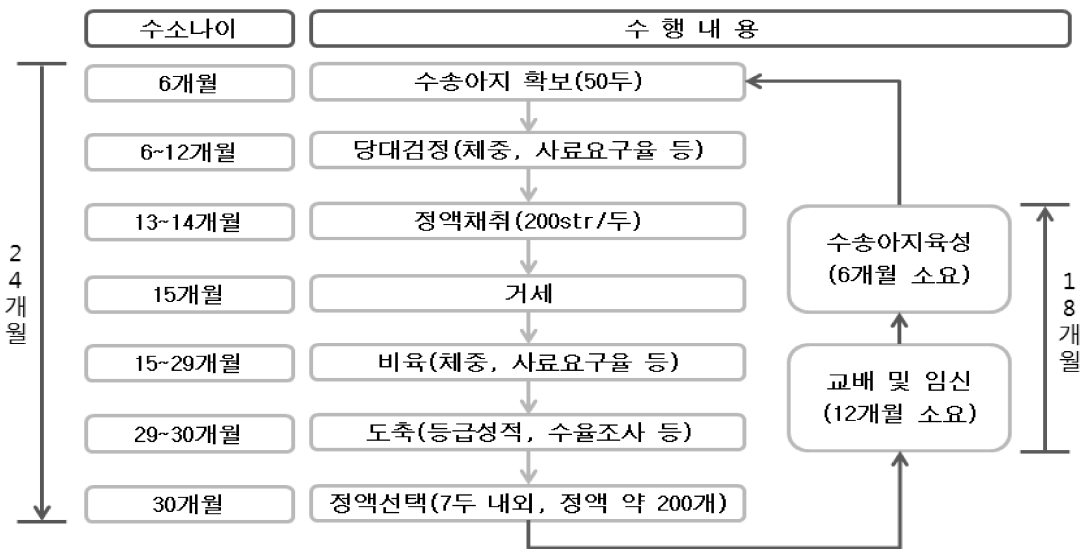
○ 사업기간 : 10년(3세대 : 1세대 검정기간 40개월)

* 현재 검정체계는 6년 소요(당/후대검정)

< 사업추진체계 >

- 당대검정만으로 우수 씨수소를 조기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계속적으로 실시
- 당대검정우는 정액을 채취한 후 거세·비육(30개월령까지)하고, 도축 성적 등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암소집단에 사용
- 우량 유전능력을 받고 태어난 암소는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과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기존 암소집단을 대체

< 씨수소 선발 및 사업수행 체계 >



* 정액선택에 42개월(18+24) 소요(교배/임신→수송아지육성→수송아지 확보→정액선택)

○ 검정우 확보 후 24개월 이내에 씨수소 선발 및 정액 이용

- 씨수소는 20두/년 내외 선발(연간 150두에서 20두 선발)
- * 인공수정(2~3개월) → 임신·분만(10개월) → 송아지육성(6개월)
- * 시험검정우 확보(6개월령) → 당대검정(6~12개월령) → 정액채취(13~14개월령) → 거세·비육(15~30개월령) → 도축(30개월령)·선발 → 정액이용(31개월~)

- 각 사업기관은 교배계획을 작성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정액을 신청하고, 한우개량사업소는 사업참여 지자체에 정액 공급
 - 증체, 도체성적 및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정액공여 씨수소 연간 20두 내외 선발(사업활성화 후 '19년 사업수행 기준)
 - 사업참여 기관(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지자체)은 보유 암소에 1세대 정액을 계획교배한 후 태어난 수송아지는 30개월령까지 거세·비육
 - **(예비검정)** 태어난 소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80% 수준을 시험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12개월령까지 체중, 외모심사, 사료요구율 등 검정
 - **(정액채취)** 13~14개월령에서 정액채취 후 거세(저능력 정액채취 불가 소 도태)
 - **(비육·검정)** 30개월령까지 비육 및 체중·사료요구율 검정
 - **(유전평가)** 도축 후 도체성적 및 검정성적,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평가(국립축산과학원)
 - 암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축을 선발, 기존 암소를 대체
 - **(당대검정)**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12개월령까지 체중, 외모심사, 초음파검사를 실시
 - **(평가·교체)**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저능력우 도태
- * ex) 기존 100두 암소와 당대검정이 끝난 35두의 암소를 함께 유전능력평가 한 후, 능력이 낮은 35두는 도태하고 새롭게 조성된 100두에 계획교배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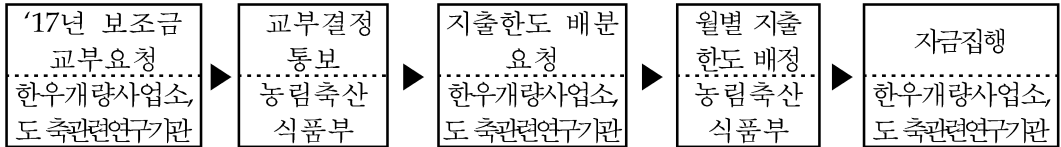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한우개량사업소)	1개소	200	200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지자체)	4개소	50	200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③ 희소한우(취소, 흑우) 개량지원

가. 사업목적

- 희소한우(취소, 흑우) 개량기반을 구축하고, 수소 검정을 통하여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취소 농가에 정액 공급
 - 우량 씨수소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희소한우 두수 확대
- 혈통 및 모색 조사를 통하여 희소한우의 관리 기반 구축

나. 사업대상 및 선정

□ 사업대상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선정된 지자체

□ 사업신청 자격

- 우사 : 암소 우사(분만우사 포함), 육성우사, 단방식 당대 검정우사 (10두 이상), 거세우 비육우사 보유(또는 보유 계획 제출)
- 검정시설 : 체중측정(유도로 포함) 및 초음파 촬영 시설, 사료 섭취량 조사 시설 등 보유(또는 보유 계획 제출)
- 정액제조 시설 : 정액채취 및 인공수정용 정액 제조 시설
- 번식관리 : 암소 전 두수 계절번식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두수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 * 보유축 5대 질병 검진결과(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 단, 구제역은 NSP검사 결과 첨부
- 농가보유 희소한우 혈통 및 모색 조사

□ 시행기관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중 사육시설, 검정우사 보유 여부, 인력 등 사업시행 여건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을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신청서(서식 2)와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17.2월)

* ①사업 신청서, ②사업 참여 암소 보유 내역서 및 종축등록증 사본(또는 보유 계획), ③축산업 허가(등록)증, ④시설보유 내역 및 사진(또는 보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에 대상자 평가 의뢰

- 국립축산과학원은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현장심사 후 신청기관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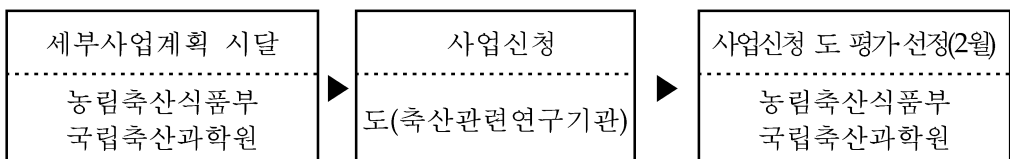
* 심사위원회 : 농식품부, 축산원, 농협, 종개협 등

· 서류 심사 : “최소한우개량지원 사업대상 선정기준”(참고)에 따라 신청자격 확보 여부를 심사

· 현장심사 :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선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평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신청 도(축산관련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17년 시행기관을 선정(17.2월)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사업 내용

- 희소한우 개량 축군 조성 : 가임암소 150두
 - 각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가임암소 30두를 확보, 개량기반 마련
- 능력 검정을 통한 씨수소 선발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별로 수송아지 10두 이상을 검정
 -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에 준하는 능력 검정 실시
- 축산 농가 서비스 : 희소한우 정액 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 희소한우(흰소, 흑우) 정액 공급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종축개량협회 등)과 협력하여 희소한우 보유농가에 정액을 시범적으로 공급,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 90백만원(축산발전기금/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용도 : 희소한우 암소 구입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희소한우(흰소, 흑우) 개량지원	3개소	30	90

라. 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 사업주관 :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신청기관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 현지심사)
- 사업 참여 최소한우(수소, 암소) 유전능력평가 및 씨수소 선발
- 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및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시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개량축군, 검정시설, 정액처리시설, 인력 등 개량기반 확보
- 계획교배, 암소 및 수소에 대한 검정 실시 및 도축후 도체정보 수집
- 선발 씨수소 정액 생산·교환·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마. 사업 세부추진계획

□ 개량 축군 조성

- 암소매입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해 12개월령 이상 암소 30두 조성
- 전두수 계절번식을 실시하고, 20두 이상의 송아지 생산
-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 매년 적정두수의 농가 유전자원 도입

□ 번식우 관리 및 계획교배

- 사업참여 암소는 상반기(5~6월) 번식과 하반기(11~12월)번식으로 구분하여 전 두수 계절번식
 - 30두의 암소를 상반기 번식용 15두와 하반기 번식용 15두로 구분
- 사업시행기관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과 씨수소의 유전능력 및 근친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동일 암소에 대하여 해당 번식기간 동안 동일한 씨수소 정액 사용
- 사업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암송아지는 6~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중체, 외모심사, 초음파)을 실시

□ 당대검정

- 당대검정 전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체중 측정
- 예비검정 : 태어난 수송아지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두 이상을 당대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실시
 - 예비검정을 마친 수송아지 전두수를 단방우사에서 검정
 - 검정항목 : 체중측정(6, 9, 12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촬영(12개월령)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12개월령 체척 측정 및 외모심사는 전문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

□ 정액 생산

- 당대검정 후 13~15개월령에 각 수소별 1천개 정액(스트로) 생산·보관
- 가축검정기준의 “정액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정액 제조

□ 거세 : 정액 생산 후 거세(유혈 및 무혈)

□ 비육우 검정

- 검정기간내 동기우 그룹 유지
 - 우방을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우방에 있는 비육우들을 같은 날 출하
- 검정항목 : 체중 측정(18, 24, 30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 촬영(24개월령)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30개월령에 도축 후 도체 자료 수집
 - 자료수집 항목 : 냉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
- 외모심사 : 한우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실시

□ 씨수소 선발

-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능력 평가 및 외모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 지수에 따라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별 씨수소 2두를 선발(3월, 9월)
 - 유전능력평가는 모든 시행기관의 수소에 대해 반기별로 공동 평가
 - 선발결과를 사업참여 기관에 통보
-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을 다른 기관과 교환

□ 암소검정

- 암소검정을 통하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를 도태
- 검정항목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중 측정 및 12개월령 초음파생체단층 촬영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혈통관리

- 본 사업에서 생산되어 생시체중을 측정한 모든 한우의 혈통관리 실시
 - * 생시체중 측정 후 이유 전에 폐사한 경우라도 혈통 관리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분만우의 친자감정을 의뢰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전체 보유축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연 1회)
 - 질병검진 항목 : 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 (구제역은 NSP 검사 결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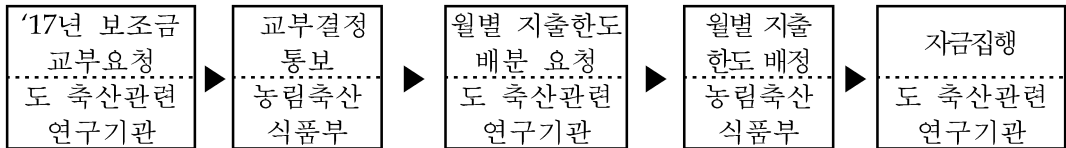
□ 자료관리

- 시행기관은 개체정보, 번식정보, 능력검정정보, 도체정보, 유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농가의 희소한우 혈통 및 모색 조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마. 사업 지원 및 사업비 관리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기관에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바. 사업평가

□ 평가목적

- 희소한우 개량사업 성과를 높이고, 사업시행기관 간 유전자원 공유, 우량소 공동선발 등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평가대상 : 시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평가항목 : 암소 두수, 당대검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정액생산, 검정참여율(능력검정실적), 친자일치율 등
 - 평가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별도 마련

□ 평가에 따른 조치

- 실적이 저조한 시행기관은 사업비 삭감 및 제외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재
70점 이하	경고 및 사업비 20% 삭감
71-80점	주의

- *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
- * “경고”와 조치와 함께 사업비 삭감 → 2차 경고시 1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 * “경고” 조치 후 익년에 “주의” 이하 평가 시 사업비 삭감

- 도 시행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 참여 제한

<서식 1>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연간 계획(A)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당대검정		사업량					
○ 교 배(사업소)	두						
○ 수송아지 확보	두						
- 사업소(선발)	두						
- 개량농가(매입)	두						
- 육종농가(매입)	두						
○ 검정개시	두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사업소분	두						
- 지자체(매입)	두						
나. 후대검정							
○ 농장후대 전문농가	호						
○ 교 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대상축 생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개시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보증씨수소 선발	두						
다. 정액생산공급							
○ 씨수소사육	두						
- 보증씨수소	두						
- 후보씨수소	두						
○ 정액생산							
- 보증씨수소	천str						
- 후보씨수소	천str						
○ 정액공급	천str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 조 금(/4분기까지 실적)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 계									
○ 한우개량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서식 2>

최소 개량 사업 참여 신청서

1. 사업자(도 기관명) :

(인)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사업담당	기관장	부서장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2. 사업추진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 주요 업무 :
- 토지, 건물, 가축 등 보유현황 :

나. 시설 보유 현황

- 사업참여 암소 :
 - 우사 :
 - 검정시설 및 장비 :
 - 정액제조 시설 :
- * 해당여부 및 간략한 현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다. 최소 암소 보유 현황

구 분	계	성우	육성우	송아지
암	3대 이상			
	2대			
	당대			
수				
합 계				

라. 우사현황

시 설 명	동수	면적(m ²)	적정사육 두수	내 용
번식우사				
육성우사				
검정우사				* 단방식 검정우사
비육우사				
소 계				

마.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위·직급	학위	전 공	담 당 업 무	비고

바. 정액채취 및 제조시설

- 정책 채취시설 규모(주요 장비) :
- 정액제조 장비 및 기자재 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ℓ)	주용도	보존능력 (수량)
액체질소탱크					
스트로프린터					
실링&필링					
항온실					
이미지분석장치					
...					

사. 검정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명	개수	규격	주용도	설치(구입) 년도
초음파 및 체형측정실				
능력검정 유도로				
초음파영상진단기				
사료섭취량 측정기				

3.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운영 계획

- 사업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관 총사업비						
한우개량 분야 사업비						
최소 개량 사업비	자체					
	국고					

- 인력운영 계획

- 최소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분야(가축개량 및 번식 등) 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나. 암소 추가 도입 및 관리계획

- 추가입식 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두 수			

- 구입, 수정란 이식 등 최소 확보 방안

- 번식관리 : 상·하반기 암소 계절번식(5-6월, 11-12월) 계획

- 계절번식 계획교배 참여 두수, 세부 일정 등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소에 대한 질병관리 관리

-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등

다. 시설보완 계획

- 우사, 검정시설, 정액제조 시설 등 최소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추가 확보·보수계획을 기재

- 시설설치 세부내역 :

- 부지 및 예산 확보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라. 장비확보 계획

- 검정 및 정액제조 장비, 사료섭취량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등 칩소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확보계획을 기재

- 장비 세부내역 :

- 장비구입 예산 확보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마. 기타

-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등

4. 칩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가. 칩소 농가 지원

- 수정란 이식, 보조금, 정액 공급 등

나. 칩소 씨수소 관련

- 칩소 씨수소 보유 두수, 칩소 씨수소 정액 생산,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간 칩소 정액 교환, 농가 칩소 정액 공급 등

참고

희소한우 개량지원 사업대상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기반 여건 (40)	가임두수(1세 이상) 두수	30	10두 이상(30점)/7~9두(25점)/4~6두 (20점)/ 1~3두(15점)/0두(0점)		
	최소 씨수소 보유 두수	10	5두 이상(10점)/2~4두(8점)/1두(5점)/ 0 두 미만(0점)		
인력 구성 (10)	육종학 석·박사	6	2명 이상(6점)/1명(4점)/0명(0점)		*연구인력
	기타 석·박사 인원수	4	2명 이상(4점)/1명(2점)/0명(0점)		*연구인력
사업 환경 (20)	최소 분만우사 보유 여부	5	보유(5점) /보수 후 사용 가(3점) 미확보(0점)		
	최소 비육우사 보유 여부	5	보유(5점) /보수 후 사용 가(3점) 미확보(0점)		
	우형기 및 유도로 보유 여부	5	보유(5점)/보수 후 사용 가(3점)/미확보(0점)		
	냉동정액 생산시설 보유 여부	5	보유(5점)/보수 후 사용 가(3점)/미확보(0점)		정액생산 기자재 보유
최소 사업 추진 (20)	최소 정액 생산	10	생산(10)/보완 후 생산 가능(7)/생산 불가능(0)		2016년
	최소 정액 교환	5	교환(5)/보완 후 교환 가능(3)/교환 불가능(0)		2016년
	최소 정액 공급	5	공급(5)/보완 후 공급 가능(3)/공급 불가능(0)		2016년
기초 자료 관리 (10)	개체관리기록부	5	양호(5점)/ 보통(3점)/미흡(0점)		
	인공수정기록부	3	양호(3점)/ 보통(2점)/미흡(0점)		
	송아지 생산 기록부	2	양호(2점)/ 보통(1점)/미흡(0점)		
사업 수행 의지 (10)	사업수행 지속성	5	양호(5점)/ 보통(3점)/미흡(1점)		
	사업수행 의지	5	양호(5점)/ 보통(3점)/미흡(1점)		
합 계		110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농가의 암소개량을 촉진
 - 암소별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우의 다산 및 저능력우의 조기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씨수소를 통한 개량과 함께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여 한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지원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7,560	2,400	3,902	3,903	3,375	
- 보조	7,560	2,400	3,902	3,903	3,375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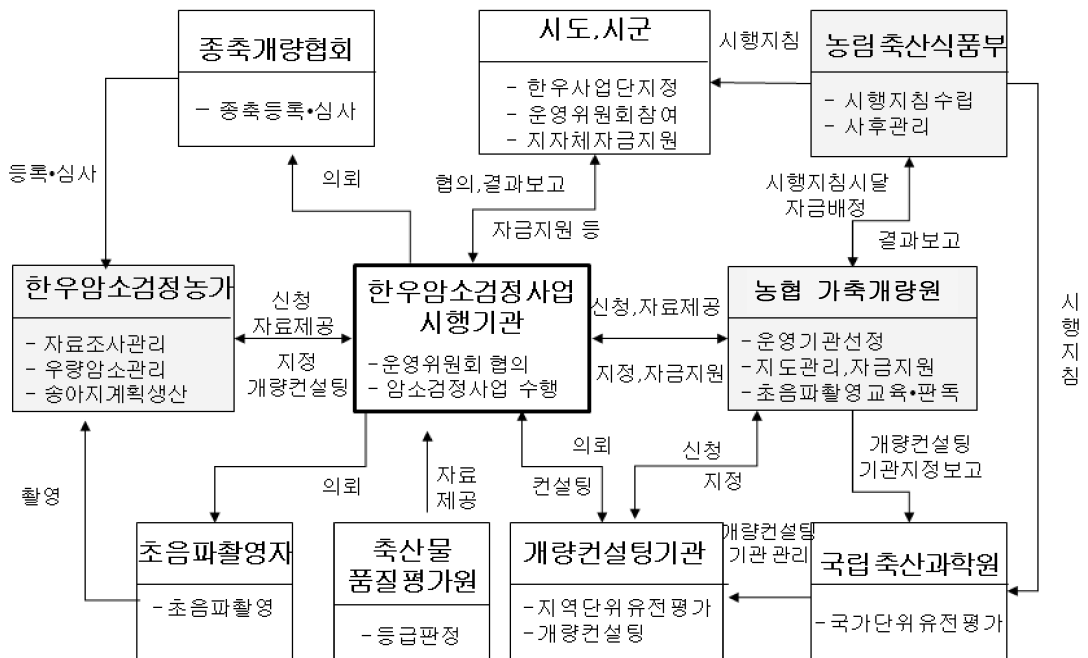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

□ 협조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및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심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소 도체 등급판정
- 개량컨설팅기관(대학 및 개량기관) : 지역단위 유전능력평가 및 시행기관 컨설팅
- 초음파 판독기관 : 농협 축산연구원 및 한우개량사업소
- 초음파촬영기관 : 시행기관 및 개량컨설팅기관(초음파촬영자)
- 친자감정기관 : 소이력제 생산단계 DNA 검사기관 및 한우개량사업소로 암소검정농가 송아지 친자감정 실시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이하 '조합')
- 운영계획 : 60개소(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조합으로서 농가지도비 자부담 참여농가가 50호 이상이고, 12개월령 이상 혈통관리 암소 1,000두 이상 보유
- 조건부 시행기관 : 기존 시행기관 중 실적 부진기관 및 신규 참여 기관
- 한우암소검정농가 : 시행기관이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령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하 '암소검정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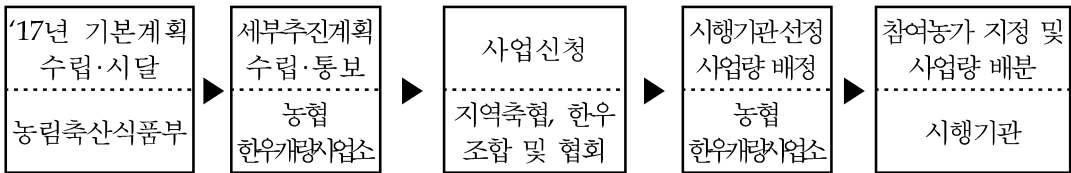
□ 지원조건

- 사업시행기관 농가지도비
 - 암소검정농가별로 인공수정, 송아지분만 및 암소검정(체중, 체척, 초음파촬영)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농협 축산경제통합시스템(암소검정사업관리)을 통해 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대상우의 친자감정을 수행
 -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평가 및 시행기관 개량 컨설팅을 수행
- 농가 암소 개량지원비
 - 고능력 암소로 지정되어 당해 연도에 4~7산차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저능력 암소로 지정된 2산차 이하의 암소를 도태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 사망 시에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암소검정사업 >



○ 사업신청(사업시행기관)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 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암소검정사업 신청 전 절차 >

- 시행기관은 지자체 및 개량컨설팅기관 등과 협의하여 암소검정사업계획 수립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사업 참여 대상농가에게 암소검정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신청서를 접수

○ 시행기관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5인 이상의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운영 계획상의 시행기관수를 고려하여 시행기관을 선정
- 전년도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사업계속 참여여부를 결정(사업실적 부진조합은 선정에서 제외)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상위 90%인 시행기관은 자동선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하위 10%이내인 시행기관은 재평가 후 사업참여 여부 결정
 - 전년도 친자감정결과 일치율 65%이하인 시행기관은 차년도 사업제외

○ 사업량 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라 시행기관의 사업량 및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통지하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건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통지(1월)
- 사업량 배정은 검정원 1인당 200호 이내로 정하되 최대 600호 이내로 제한(단, 전년도 시행기관은 제외)

○ 참여농가 지정

- 시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암소검정농가를 지정·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의 참여농가 지정결과에 따라 시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농가지도비는 시행기관의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농가지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수용비 및 지도수당 등)로 집행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는 초음파촬영, 판독수수료 및 담당직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지급
- 친자감정비는 친자감정기관에 분석비, 담당직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지급
- 개량컨설팅비는 시행기관-개량컨설팅기관 간 체결 용역비 등으로 활용
- 고능력 암소 개량지원비는 고능력 암소의 송아지 분만 시 해당 고능력 암소 사육농가에 지원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는 저능력암소를 조기 도태하는 농가에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농가지도비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암소검정농가 관리우의 발육 및 번식성적 등의 조사실적에 따라 호당 지급액을 차등 지원
 - 촉발기금 지원(호당 130천원/년) 이외의 부족분은 농가에서 부담
 - * 단, 농가지도비 농가부담분은 지자체 및 시행기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촉발기금 지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할 경우 지원
 - * 연간 사업실적에 따라 농가지도비 차등 지원(우선 80천원/호 지원, 사업실적에 따라 상위 10개소 80천원/호, 하위 10개소 20천원/호, 그 외 50천원/호)
- 사업량 : 8,500호
- 한우암소검정농가 및 시행기관 사업의무
 - 한우암소검정농가는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인공수정 후 60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자료를 전산 관리하고 농가방문 시 인공수정 여부를 확인
 -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송아지 분만자료를 전산관리하며 농가방문 시 분만여부를 확인
 - 시행기관은 한우암소검정농가에게 보유 암소의 생시, 이유시(3개월령) 및 6~9개월령 체중측정(또는 체척)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측정한 자료를 전산관리(권장사항)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농가에게 12~15개월 체중 또는 체척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와 함께 측정한 후 자료관리
 - 시행기관은 18~30개월 암소 초음파촬영을 지도하고, 촬영자료를 관독기관에 송부
 - 시행기관은 친자감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친자감정기관에 송부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농가의 지도·교육(컨설팅)을 실시
- 시행기관은 개량컨설팅기관이 제공한 교배조합에 의거 정액 소요량을 조사하여 농협에 배정 요청
- 암소검정농가는 관리암소를 계속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출하 시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하고 시행기관은 이를 전산처리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

- 지원기준 : 암소검정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18~30개월령 혈통관리 암소 초음파촬영 시 15천원/두 지원
 - 초음파촬영 시 50%(15천원/두)를 시행기관에 지원하고 축발기금 지원 이외의 부족분(15천원/두)은 농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충당
- 사업량 : 13,000두
- 물량배정 기준
 - 사업 신청량 및 전년도 시행기관의 초음파촬영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사업추진 실적	80% 미만	80%이상 110%미만	110% 이상
사업량	사업신청량 × 0.8	사업신청량	사업신청량 × 1.2

- 초음파촬영·판독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초음파촬영자)은 초음파촬영 대상우를 암소검정농가에 통보하고, 농가 요청 시 초음파촬영자에 의뢰하여 측정
 - 초음파 판독기관은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판독결과를 시행기관 (초음파촬영자)에 통보
 - * 시행기관은 초음파촬영자 명단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초음파촬영시 자료 조사 항목 : 신체충실지수(BCS)

□ 친자감정비

- 지원기준 : 사업주관기관이 정한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조당(어미소 및 송아지) 31,400원을 시행기관에 지원
 - 축산경제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어미의 친자분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조당 15,700원을 시행기관에 지원
 - 시행기관은 30천원 이내에서 친자감정기관과 협의한 금액을 분석기관에 지급
- 사업량 : 22,000조
- 물량배정 기준

- 전년도 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평가 결과의 기관별 친자일치율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사업 물량 내에서 최소 200조 이상)

친자일치율	85% 미만	85%이상 90%미만	90% 이상
사업량	관리두수 * 0.15	관리두수 * 0.1	관리두수 * 0.09

* 신규 및 조건부 시행기관은 200조 수준으로 적용

- 친자감정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은 친자감정 대상우의 시료를 채취하여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친자감정기관에 혈통정보와 함께 송부
 - 친자감정기관은 친자감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

□ 개량컨설팅비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개량관련 컨설팅 수행 시 지원
- 사업량 : 60개소 이내(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 시행기관 및 개량컨설팅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은 혈통자료, 발육자료, 초음파자료 및 도체자료 등 암소평가에 필요한 형질을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

- 개량컨설팅기관은 시행기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수행
 - 개량방향 설정
 - 암소검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혈통정보 등을 통해 작성한 교배 조합을 연 2~4회 제공
 - 시행기관 검정원 교육 등 개량컨설팅을 연 6~8회 수행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 대상우 : 암소검정농가의 관리대상우 중 3산차 이상 암소
 - * 산차 기준은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근거로 함
- 지원기준 : 고능력암소로 지정되어 당해 연도에 4~7산차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 사육농가에 개량지원비 지급(200천원/두)
 - * 전년도 고능력암소로 선정된 개체 중 12월에 송아지를 생산하고 개량 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금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급 하고, 고능력암소 지정은 당해 연도 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받아야 함
- 사업량 : 1,800두
- 지정방법 및 절차
 - 물량 배정 : 전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고능력암소 지원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기관별 차등 배정

고능력암소지원 실적(%)	80이상	60~79	60미만
배정비율	관리두수 * 1.2%	관리두수 * 1%	관리두수 * 0.7%

- * 고능력암소지원 실적 : 지원두수/배정두수*100
- * 신규 시행기관은 관리두수 * 0.7% 수준으로 적용
- 대상우 지정기준 마련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시행기관별 도체 등급판정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번식성적 등을 바탕으로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대상우 선정 : 시행기관은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순위에 따라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고능력암소 선정

○ 고능력암소 사육농가 의무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인공수정기록 및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공수정 후 60일 이내 시행기관에 신고
- 고능력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
-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으로 고능력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이 등록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당해 연도에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

□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암소검정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
- 지원기준 : 유전능력이 낮은 것으로 통보받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 (2산 이하, 1648일령 이내 비육출하)하는 경우 사육농가에 인센티브 지급(150천원/두)

* 전년도 지정우 중 전년도 12월에 도태된 개체중 개량지원비를 받지 못한 경우 금년 사업비 중 일부를 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량 : 3천두

○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관리두수 기준으로 배정

* 예고 : 2018년부터는 전년도 저능력 암소 도태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대상우 선정기준

- 개량컨설팅기관의 시행기관별 유전능력평가 결과 하위 30% 대상우 선정
- 산차별 번식능력 하위 개체
- 전년도 지정우 중 도태기준에 적합한 개체
- 기타 저능력 암소(사업량의 10% 이내로 지정) : 현지심사시 발육부진, 외모불량(이모색, 체형), 송아지 양육거부, 난폭우 등
- 현지심사 :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이 선정한 저능력 암소 대상우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
- 대상우 선정통보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2산 이하 조기 도태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임을 통보

○ 의무사항

- (농가) 해당 소가 비육·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행기관에 제출
 - * 조기도태 대상우가 비육·출하되지 않았을 경우(송아지 생산 등) 자금 회수 및 사업불이익 조치
- (시행기관) 소속 농가의 저능력 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암소의 비육출하 근거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농가지도비	8,500호	130	1,105
암소검정비	13,000두	15	195
친자감정비	22,000조	31.4	691
개량컨설팅비 ^{주1)}	60개소	10,000	575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1,800두	200	360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 지원	3,000두	150	450

주1) 조건부 시행기관 5개소 : 5,000천원 지원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매월 축산경제통합시스템 암소검정실적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분기별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자금배정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자금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에 따른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및 개량컨설팅비 등을 사업주관기관에 반기별로 지급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시행기관에 지급
 - 지역축협은 환으로, 그 외 관리기관은 지정계좌로 입금
 - 사업주관기관은 연도 말에 시행기관과 사업비 정산 실시
- 시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기타예수금으로 기표한 후 농가지도비와 암소검정비(초음파촬영비)는 해당 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해당 기관에 무통장 입금
 - 보조금 집행후 잔액은 사업주관기관에 반납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 점검일정 : 3년마다 1회 이상 현지방문 조사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사육현황, 암소검정현황 및 개량컨설팅 추진실적 등

□ 사후관리

○ 시행기관 교육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검정원을 대상으로 검정원 개량기술 교육 및 세부추진계획 교육 실시
- 시행기관의 검정원 교체 등 요청 시 사업교육 실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 폐쇄,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기관의 사업물량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시행기관은 지정농가가 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농가 수로 농가를 변경·지정하고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암소검정사업의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7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8.1월)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종합평가

- 평가 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따라 연도 말 실시(11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주관기관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 연도 시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에 활용

□ 한우암소검정농가 만족도 조사

- 암소검정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등에 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현지점검 시
 - 조사대상 : 암소검정농가에 대하여 시행기관별 3~5호 조사
 - 조사방법 : 조사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의 조사계획은 사업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12월)

□ 종합유전능력분석 실시

- 평가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의거 다음 연도 중 1회 실시
- 평가방법 : 국립축산과학원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유전능력평가 실시
- 평가에 따른 환류 :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 등에 활용

[붙임] 기관별·시기별 한우암소검정사업 세부업무내역

시기	주관기관	시행기관	협력기관	비고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평가 및 보조금지급 - 시행기관신청접수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참여 신청접수 - 신청용 친자감정 - 사업계획 작성 - 사업신청 	<친자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용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시달 (농림축산식품부) -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작업완료 (국립축산과학원)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기관지정통보 - 사업물량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검정 교배 - 당대검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원 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농가 지정통보 - 고능력암소 현지심사 	<개량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능력암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육성적조사 - 초음파촬영 - 고능력암소 선정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판독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사업마감·평가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검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촬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능력암소 현지심사 - 친자감정시료채취 	<친자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점검 - 저능력암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컨설팅기관 워크숍 (국립축산과학원)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사업마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검정교배 - 당대검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촬영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자감정시료채취 	<친자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판독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사업마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 판독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검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합평가 - 사업만족도조사 실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개량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자료분석·교육 	

* 시행기관은 매월 혈통관리, 발육조사, 도체성적조사 및 농가지도 실시

<서식 1>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농 가 용)

1. 보조사업명 : 한우암소검정사업

2.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3. 사업의 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4. 사업의 의무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인공 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 시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해야 함

5. 사업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6. 한우암소검정사업 신청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위와 같이 2017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시행기관 ○ ○ ○

귀하

<서식 2>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시행기관용)

1. 보조사업명 : 한우암소검정사업

2. 사업 관리조합 주소 :
조합(사업단)명 :

3. 사업의 목적

- 한우 암소의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4. 사업비 신청액 : 원

- 농가지도비 : 원(호)
- 암소검정비 : 원(두)
- 친자감정비 : 원(조)
- 개량컨설팅비 : 원
- 고능력암소지원 : 원(두)
- 저능력암소지원 : 원(두)

5. 사업비 소요현황

구분	참여단위	총소요액	축발기금보조	지방비	시행기관부담	농가부담
농가지도비	호					
암소검정비	두					
친자감정비	조					
개량컨설팅비	-					
고능력암소지원	두					
저능력암소지원	두					

6.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7. 사업비 사용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8. 붙임 : 한우암소검정사업 계획서

위와 같이 2017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3>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통보서

1. 한우암소검정사업 지정내역

○ 축주내역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참여두수	두		농가지도비 자부담	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2. 지정조건

- 지정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12~15개월 암소는 암소검정에 참여해야 함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로 통지합니다.

2017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서식 4>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 통보서

1.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내역

○ 사업대상 농가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주택		
			이동전화		

○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2. 선정조건

- 선정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개량지원비는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 시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능력암소로 지정된 개체는 계속사육을 권장하며, 개량지원비를 지급받은 후 매각(출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됨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한우 고능력암소 지정농가로 선정되어 통지합니다.

2017년 월 일

시행기관 : ○○○ (인)

<서식 6>

한우저능력암소 조기도태 및 보조금 신청서

농가현황

농가명		연락처	
농가주소			
계좌번호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신청 내역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유전능력				최종만령	도축기한	도태신청(도태월)	심사결과(번호)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1										
2										
3										
4										
5										
6										
7										

※ 유전능력평가 결과는 암소검정사업 개량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함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됨

※ 보조금은 축산물이력제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지급함

한우암소검정사업 조기도태 대상우 신청 및 출하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시행기관 _____조합,

신청인 _____ (서명)

○ ○ ○ 장 귀하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 - 농가 - 참여두수 - 암소검정두수 - 친자감정두수 - 고능력암소 지원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개소 호 두 두 조 두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시행기관			농가자담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 암소검정비 - 친자감정비 - 개량컨설팅비 - 고능력암소지원 - 저능력우 도태 인센 티브 지원	호 두 조 개소 두 두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시행기관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 시 보고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우량 수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 씨수소 생산용 암소의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 암소 모집단 구축
- 한우 씨수소의 우수한 유전자 농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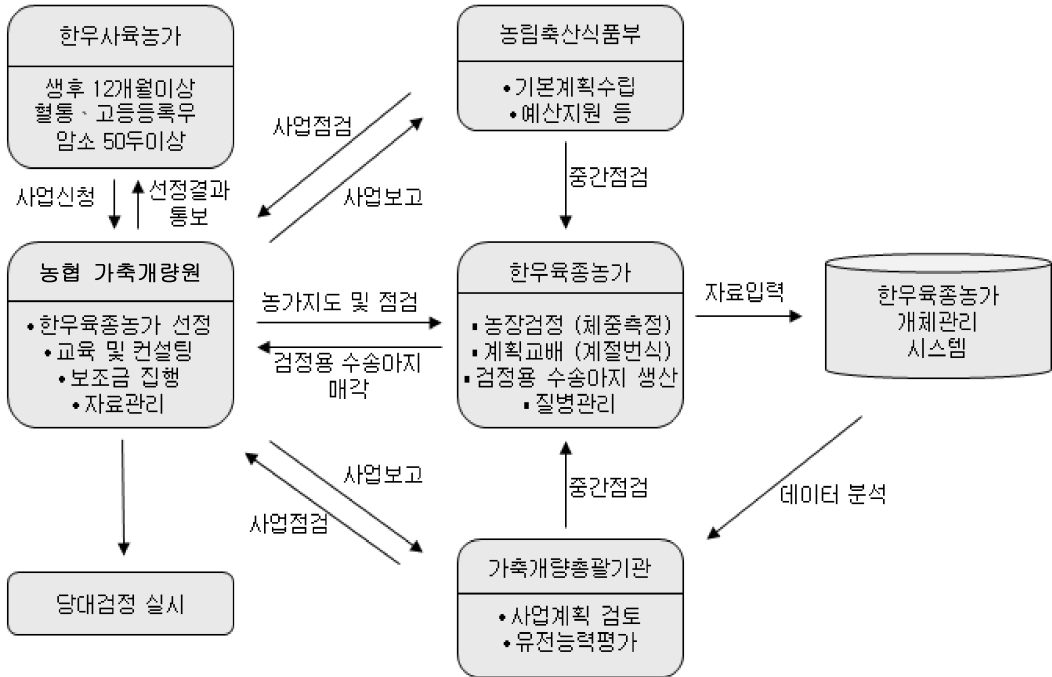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114	2,725	2,875	2,785	
- 보 조	2,114	2,725	2,875	2,785	
-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한우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 및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 연구기관)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농가(기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를 50두(한우육종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불가피하게 전 두수의 계절번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 판정(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질병검진 실시)을 받은 한우육종농가(센터)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 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한우육종농가(센터)

나. 육종용 씨수소·씨암소 관리·운영

□ 관리우 지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에서 계절번식에 참여하고, 친자감정이 완료된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우를 관리우(보유암소)로 선정

□ 계획교배

- 한우육종농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유암소를 보증·후보씨수소(정액)와 계획교배 실시

□ 농장검정

- 농장검정은 계절번식(계획교배)으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감정 결과 일치하는 송아지에 한하여 실시
 - 암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암소검정대상우를 선정하여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발육 및 육질자료(초음파생체단층촬영)를 조사
 - 수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조사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당대·후대검정 대상우 심사에 참여
-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육종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승인을 받아 당대검정 자체실시 가능

□ 질병검진

- 한우육종농가는 연 1회 이상 농장 내 1세 이상 전 두수(수소는 생애 1회만 질병검진)에 대한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의 검진을 질병검진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질병에 감염된 후 질병종식 전까지 한우육종농가사업 중 계절번식, 농장검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 중단

다. 한우육종농가 승계

□ 승계사유

- 한우육종농가사업 선정 당시 농장주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승계(농장주의 사망, 병중, 노환 등)

□ 승계대상자 : 배우자 및 직계자손

□ 승계방법 : 한우육종농가 승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심사(면접 등) 실시 후 승계여부 판단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 5인 이하*)
- * 주관기관과 가축개량총괄기관 소속 직원 각각 1인은 당연직으로 포함

라. 지원자금별 용도 및 지원형태

□ 검정비

- 자금용도 : 송아지, 암소검정우 및 관리우 사육에 필요한 사양관리비(사료, 첨가제, 시약 및 사양관리물품 등) 및 친자감정용 채혈비 등에 사용
- 지원대상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에서 생산된 친자감정 송아지 중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을 측정된 개체 및 암소검정(6개월령,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에 참여한 개체로서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한우육종농가

- 다만, 신규 선정 한우육종농가의 관리우에 한하여 계절번식에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해와 익익년의 1월말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검정비를 지급

○ 지원기준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가 확인된 개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암, 수소) : 두당 100천원
 - 6개월·12개월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암소) : 두당 200천원
-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1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1」 로 신청한 검정비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으로 지급

○ 한우육종농가 의무사항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을 사용하여 계절교배를 실시하고 수정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정확한 혈통관리를 실시
- 송아지 분만 시 생시체중 측정 및 외모조사를 실시하고, 이유시 체중(3개월령), 6개월령 체중, 12개월령 체중을 측정하여 2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해당 자료 입력
- 혈통관리를 위해 친자감정 대상우의 샘플을 채취한 후 사업주관기관 및 친자감정기관에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당대검정용 수송아지로 선정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매각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사(암소검정우 초음파촬영 및 관리우 전수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

□ 우형기 설치비

- 자금용도 : 체중측정 및 초음파생체촬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정틀, 체중측정기, 유도료)
- 지원대상 및 기준
 - 내구연한(10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보정틀 포함) : 호당 4,500천원 이내
 - 농장후대검정 참여를 위해 우형기 신규 설치농가 : 8,2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지원대상농가 체중측정기, 보정틀 등을 설치 후 「서식 2」으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설치비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우형기 설치 농가의 사업의무
 - 설치한 우형기, 보정틀 유지 보수

□ 질병검진비

- 자금용도 :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집단의 청정화를 위한 질병검진 비용 및 채혈비
- 지원대상 및 기준
 - 한우육종농가에서 연 1회 질병검진을 실시한 농가
 -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를 자금범위내에서 지급(단, 채혈비는 두당 5천원 이내로 함)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 등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의 사업의무

- 암소축군 질병 청정화를 위한 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

□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자금용도 : 후보·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량 씨암소 관리 등
- 지원대상 :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
-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후보 씨수소	보증씨수소		
		하 : 0~20%이하	중 : 20%초과~80%이하	상 : 80%초과~100%
지원금액	10	30	40	50

* '12년까지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수송아지 매입 해당연도에 예고한 정액 판매대금의 일정비율(10%) 적용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씨수소 선발 후(후보씨수소 3월·9월, 보증씨수소 2월·8월) 개량장려금을 해당 씨수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다만, '12년까지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축발기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1월까지 해당 씨수소 정액판매액의 10%를 12월에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 자금용도 : 농장후대검정 자료를 조사한 개체의 사양관리비 등
- 지원대상 : 농장후대검정우의 검정자료*를 제출한 후대검정 참여농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체중, 24개월령 초음파촬영

○ 지원기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 : 두당 100천원
- 6, 12, 18, 24개월 체중측정, 24개월 초음파촬영 : 두당 400천원
-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 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300천원 지원
- * 지정취소된 농장이 후대검정우의 자료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료조사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4」로 한우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를 신청할 경우, 개체 및 검정자료를 확인 후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 사업의무

- 한우육종농가는 농장후대검정 계획교배로 태어난 수송아지를 6개월령에 거세하고, 체중측정(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출하시), 24개월령 초음파촬영 및 도체성적을 사업주관기관에 제공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두,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검정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6,480	648	6,480두×100천원
	검정참여우(체중 측정, 초음파촬영)	2,600	520	2,600두×200천원
우형기 설치비		8	36	8호×9,000천원×50%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보증씨수소	24	1,080	◦'12년까지 선발 : 2두×25천str×10천원×10% ◦신규선발 : 22두×40백만원 ◦지자체선발 : 3개소×50백만원
	후보씨수소	45	450	45두×10백만원
농장후대검정 우형기설치비		5	41	5호×8,200천원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400	40	400두×100천원
	6, 12, 18, 24개월령 체중 및 초음파측정	300	120	300두×400천원
합 계			2,935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으로 보조금 배정
- 한우육종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 기존 농가 : 사업주관기관은 전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신규 농가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한우육종농가와 보조금 교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만, 당사자간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 연장)
 - 기존 한우육종농가 : 전년도 12월
 - 신규 한우육종농가 : 매년 5월(다만, 선정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직접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지자체 한우육종센터 개량장려금

- '16년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한우육종센터는 보증씨수소 선발 개량장려금 사용(검정비용으로 한정)에 관한 '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을 신청
 - 지원액 : 60백만원/개소
 - 한우육종센터 생산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후대 검정 목적으로 매각해야 되며, 해당 한우육종센터가 희망할 경우 해당 씨수소가 생산한 정액의 50% 우선 구입 가능
- * 단, 정액은 유상판매 원칙이며 판매수량은 재고수량을 감안하여 해당 한우육종센터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자.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별로 암소의 검정자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지도 및 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를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우 현황 및 암소검정우의 초음파생체자료를 수집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 한우육종농가사업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한우육종농가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주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점검(연 1회 이상)
 - 점검대상 : 한우육종농가
 - 점검항목 : 친자정확도, 관리우 보유현황, 인공수정 및 송아지 생산두수, 검정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 한우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그 농가가 보유한 관리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한우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
 - 사업실적 부진으로 한우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농가
 - 지침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농가
 - 계획교배용으로 공급된 정액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농가
 - 한우육종농가 관리우 및 검정우에 대한 허위 신고 육종농가

□ 결과 및 정산보고

- 결과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추진실적을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서식6)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정산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연도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다음해 1월말)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농가는 사업에서 제외하여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
 - 평가기간 :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신규로 선정된 한우육종농가를 제외한 모든 육종농가 및 센터
 - 평가항목 : 친자일치도,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송아지 생산 대비 암소검정우 참여율, 관리우 보유현황 및 검정원 협조여부 등

□ 사업환류

- 사업부진 한우육종농가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이하	경 고
70점 초과 80점 이하	주 의

- “주의 → 경고 → 지정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또는 “경고” 평가를 받은 한우육종농가는 지정을 취소

나. 기타사항

- 지정 취소로 한우육종농가수가 100호 미만일 경우 취소된 농가호수 만큼 농장후대검정전문농가 중에서 우선 선정

<서식 1>

한우육종농가 검정비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관리우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관리우 신청내역

순번	관리우 개체식별번호	씨주소명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산차	성별	생년 월일	(대리모)	지급대상 확인

- ※ 대상우확인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
(전산자료 출력가능)
- ※ 쌍태인 경우 관리우 1두를 기준하여 지급
- ※ 관리우의 송아지에 대한 자료조사 내역 : “별도양식”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검정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2>

한우육종농가 우형기 설치비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신청금액 : 원

3. 육종농가우형기 설치 비용 산출내역

품목	규격	단가	수량	금액

- ※ 외부에 의뢰하여 설치할 경우 외부사업자의 청구금액 및 청구금액 산출내역을 첨부(외부에 의뢰한 경우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농가에서 자체 공사한 것으로 간주)
- ※ 농가에서 자체 공사한 경우 품목에 대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
- ※ 품목이 많은 경우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 ※ 설치전과 설치 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우형기 설치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5>

발급번호 : 2017- 호

한우 육종농가 (후보·보증)씨수소 선발 확인서

1. 생산농가

성 명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2. (후보·보증)씨수소 선발내역

순번	개체식별번호	당소명호	종축등록번호	생년월일	매입일	선발일 (차수)	씨수소 명호	매입시 축주명

* 씨수소 당대 또는 후대검정성적 붙임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가 (당대·후대)검정을 거쳐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인)

<서식 6>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한우육종농가 ○육종농가 선정 ○육종농가관리두수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농협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①한우육종농가 ○검정비 ○우형기 지원																							

※ 사업비 내역 중 농협 및 농가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4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① 농협 한우암소개량센터 운영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초우량 한우 암소의 유전자원 확보로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를 생산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능력 제고
 - 한우 사육농가에 우수 수정란을 공급하여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능력이 우수한 한우암소의 유전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체계 구축하고 기관간 수정란 관련 기술 표준화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547	423	346	400	
- 보 조	547	423	346	400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비는 한우능력검정사업에 포함

라.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공란우 선발 및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가의 도축성적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 유전능력 평가 및 고능력 암소 발굴·선발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

마. 사업추진체계

□ 운영체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연계

-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우수 암소 선발 및 활용체계 구축
- 각 사업기관별로 수정란 생산용 우수 암소집단 유지 및 선발이용

□ 기관별 역할

- 센터 운영 총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우량암소 보유농가의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10호 x 2두/년)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우
농가, 공란우 제공 농가 및 축협 생축장 등

□ 암소개량센터 운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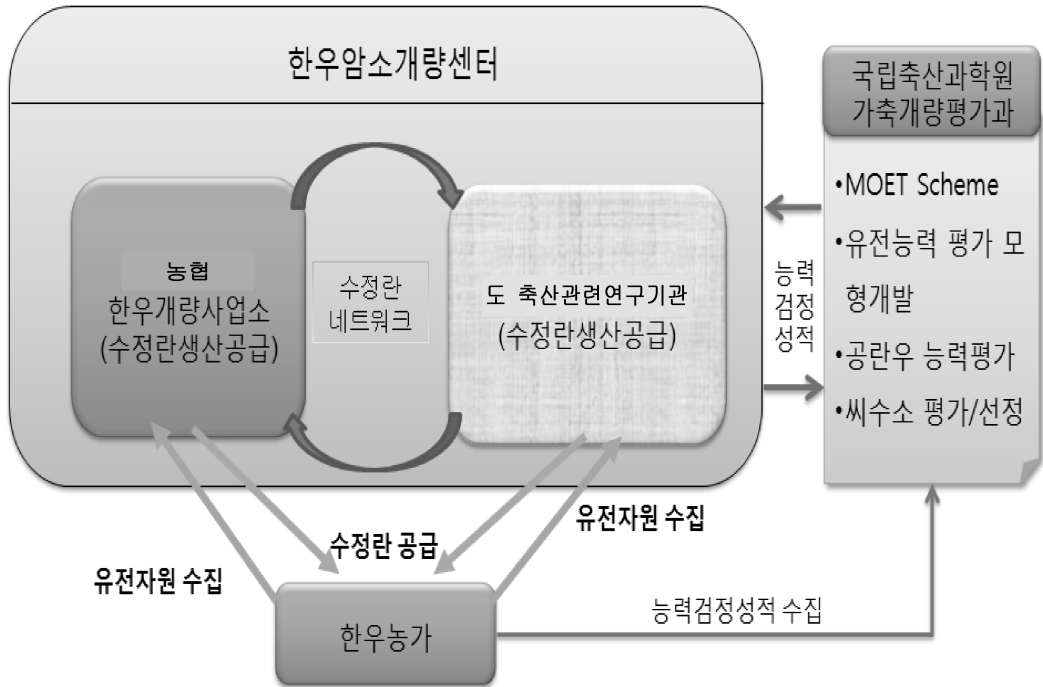
- 공란우 60두 내외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확보 50두, 외부 10두

□ 수정란 네트워크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간 수정란을 공유하는 유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개체들의 능력검정 및 우량암소 확보에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서 공급한 수정란의 이력 및 참여농가별 개량목표 설정 정보 제공

- ① 능력검정 성적과 혈통에 근거한 육종가 추정 → ②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농장 간 공유 → ③ 농장별 육종 목표에 근거한 수정란 공급 → ④ 능력검정 및 자료 취합 → ⑤ 우수 공란우 확보



< 한우암소개량센터 운영체계도 >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지원요건 : 네트워크용 수정란 생산을 위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암소 선발 및 수정란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원자금의 용도

- 공란우 채란 및 체내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수정란 관리비
- 한우암소개량센터와 수정란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추진내용

□ 우량 암소집단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보유축에서 유전능력의 상위 10% 이내에서 공란우 선발(50두 규모)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자체 보유축 중 우수개체 일부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성적 등을 활용하여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수정란 생산에 활용(10두 규모)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발한 우량암소에서 신선·동결 수정란 생산 : 1,800개(체내수정란 1,380개, OPU 수정란 420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농가에 수정란 공급(1,540개)
 - 공급 형태 : 신선란(사전예약제), 동결란(수시)
 - * 수정란 이식기술 보유, 교육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전예약을 위한 수정란 이력시스템 운영
 - 수정란 공급가격 : 250천원('14년 판매단가)
 - * 수정란 공급수수료 : 수정란 판매금액 7%
 - 공급실적에 따른 회계처리 : 기관별 수익계정

<연차별 수정란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750	975	1,150	1,150	1,800	2,500

* 수정란 공급물량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조정 가능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수란우 200두)와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의 보유축에 자체 이식

- 농가보유 고능력 암소를 이용하여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생산량 중 50%는 센터에서 인수, 50%는 농가에 이식 지원
- 지원농가수 : 10호×2두/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농가 수정란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당해 연도 가축개량지원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 집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이상 한우암소개량센터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개선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 이력시스템에 수정란 생산, 이식, 분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 관리
- 공란우 이용 연한 : 수정란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태
- 외부에서 매입한 암송아지는 능력검정을 마친 후 공란우 선발여부 결정
- 우량 송아지 생산 시 친자감정을 위한 DNA 시료 보관 유도
 - 공란우 DNA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향후 송아지 친자감정 지원
 - 씨수소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 수정란의 정확한 생산 이식을 통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 결과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수정란 생산, 공급 실적을 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수정란 공급센터 구축 지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암소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한 기관) 보유축 상위 10% 이내 암소에서 생산된 일정량의 수정란을 교환
- 기관 간 수정란 기술 표준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1회/년)

나. 암소능력검정 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법 도입

- 수정란 이식 송아지의 유전능력평가로 고능력 암소 발굴 기여
- 우량 암소 발굴을 통한 Elite-cow 집단 계통조성

다. 수정란 생산량 증가를 위한 한우 OPU 기술체계 확립

- 목적 : 수정란 생산량 증대, OPU 수정란 생산의 안정성을 위한 배양액 및 동결기술개발
- 기대효과 : 공란우이용효율 및 생산량 증대, 생체난자흡입술(OPU) 체외수정란의 수정란 이식을 통한 당대검정용 송아지 생산

②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도 축산관련연구기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과 우량암소 난자를 이용해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다량으로 생산·공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고능력 수정란 생산·공급 기반을 갖추고, 축협 생축장 및 농가에 공급하여 우량 암송아지를 확대 생산
 - * 수정란 이식기술 활용하여 지자체 및 지역축협 생축장을 통해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한우의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1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	-	2,862	2,862	20,034
- 보 조	-	-	1,431	1,431	10,017
- 용 자	-	-	-	-	-
- 지방비	-	-	1,431	1,431	10,017
- 자부담	-	-	-	-	-

라.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우량 암소 확보 및 사육시설 구비,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전반적인 기능 구축
 - * 우량암소 구입, 사육시설, 수정란 채란 및 검사시설, 수정란 생산 기구 및 장비
 - * 필요시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능·역할을 분담 가능
- 도 단위 공란우 선발 및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 우량 암소를 확보*, 수정란을 생산하여 축협 생축장 및 규모화된 암소 사육농장에 공급
 -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우량암소 선정은 현행 육종농가 및 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의 유전능력을 평가받은 암소를 대상으로 확보

□ 협조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유전능력 평가 및 고능력 암소 발굴·선발 지원
- 농협 가축개량원 : 공란우 매입지원(농협 보유축 또는 검정농가 암소 매입 협조) 및 수정란 생산·이식 관련 정보 및 교육 지원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한우개량기관)

□ 지원요건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지역축협 생축장 및 농가에 수정란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인력, 암소(공란우) 사육장 및 채란시설·장비 확보
 - * 일부 미흡한 사항은 지원 자금 및 자체 사업비를 이용하여 보완 가능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지원요건 및 절차, 지원단가 등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통보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한우개량기관과 사전협의, 필요시 세부사업계획 (사업규모, 공란우 기준 및 확보방법 등) 및 평가기준을 수립·통보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도(축산관련연구기관)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도 축산관련 주무부서(축산과)와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선정

* 사업규모, 수정란 생산·공급기반, 공란우 기준 및 확보방법 등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전문가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사업자 선정여부를 통보

- 미선정된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해당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1회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보완·제출할 수 있음

나. 지원자금의 용도

- 우량암소 확보,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및 수용성 경비 등
 - * 우량암소 구입, 사육시설, 수정란 채란 및 검사시설, 수정란 생산 기구 및 장비, 사료비,약품비, 소모성 기자재, 공란우 이용비, 기타 수용성 비용

다. 사업추진내용

□ 수정란 생산용 우량암소 축군 및 사육시설,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 확충

- 연간 600개 수준(사업추진 후 2년내)의 수정란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암소 사육시설과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을 확충
 -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 기능 및 역할을 분담 가능
- 우량 공란우 암소축군 확보 : 30두
 - 자체 보유축,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농가(육종농가, 암소검정농가)에서 유전능력의 상위 30% 이내에서 공란우 선발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성적 등을 활용하여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수정란 생산에 활용 가능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선발한 우량 암소에서 수정란(신선 또는 동결) 생산·공급 : 연간 600개
 - * '16-'17년 수정란 생산·공급기반 구축 중심으로 운영, '18년도부터 600개/년 생산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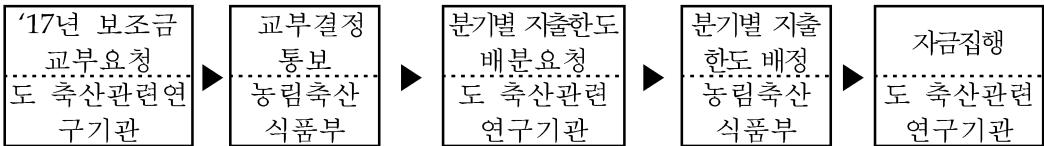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31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 사용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지원	9개소	159	1,431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가축개량원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2018.1월 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2018.2월 까지	자체서식

<서식 1>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신청서

1. 사업자(도 기관명) : (인)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사업담당	기관장	부서장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2. 사업추진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 주요 업무 :
- 토지, 건물, 가축 등 보유현황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사업참여 암소 :
- 우사 :
- 수정란시설 및 장비 :
- 수정란 제조 담당자 및 인력 :
* 해당여부 및 간략한 현황을 기재

다. 암소 보유현황

구 분		계	성우	육성우	송아지
암	3대 이상				
	2대				
	당대				
수					
합 계					

라. 우사현황

시 설 명	동수	면적(m ²)	적정사육 두수	내 용
공란우우사				

라.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위·직급	학위	전 공	담 당 업 무	비고

마. 수정란채취 및 제조시설

- 수정란 채취시설 규모 :
- 수정란 제조 장비 및 기자재 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ℓ)	주용도	보존능력 (수량)

3. 사업추진 계획

가. '17년 사업비

- 한우개량 분야 사업비
- 수정란 생산·공급분야 사업비

나. 시설보완 계획

- 우사, 수정란 제조시설 시설 등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추가 확보·보수 계획을 기재

다. 장비 확보

- 검정 및 정액제조 장비, 사료섭취량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등 고능력 축군조성사업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확보계획을 기재

다. 공란우 확보 및 추가 도입계획

- 공란우의 능력기준 및 검정방법
- 공란우 현재 두수
- 추가 입식두수

라. 수정란 생산 및 공급계획

- '16년 실적 및 향후 생산계획

연 간	'16년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생산계획						

- 공급계획
 - 공급대상 및 물량

마. 기타

-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할 경우
 - 네트워크 구성내용, 기관별 역할과 기능, 예산투여 등

5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소득 증대
 - 우량 암소(Elite Cow) 수정란 이식으로 지역 암소개량군의 유전능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생산된 우량 암송아지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반 구축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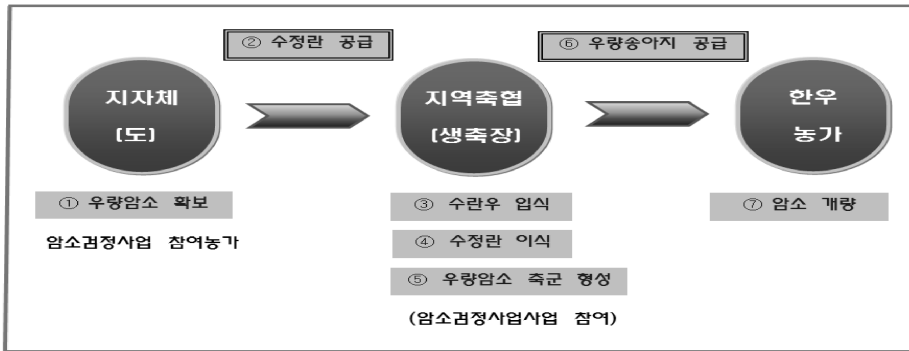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	-	15,000	9,000	63,000
- 보조	-	-	-	-	-
- 용 자	-	-	15,000	9,000	63,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라. 사업시행 및 추진체계

- 사업주관(시행)기관 : 농협(축산지원부)
- 협조기관
 - 지자체 : 우량암소 확보 및 우수 수정란 공급(무상), 지역축협 지도(수정란 이식 및 수란우 사양관리 교육 등),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
 - 지역축협의 우량 공란우 활용 방식도 가능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사업 체계도



* 본 사업은 지역축협 생축장의 우량암소 축군 형성단계까지 집중 관리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

□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수 수정란을 이용한 지역 암소개량군 기반구축을 위해 사육 시설과 사육장을 확보해야 함
 - 사육장 : 암소(12개월령) 200두 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 보유
 - 사육 시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
- 우량 수정란 확보 : 가능한 관할지역 지자체로부터 우량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 단, 자체적으로 우량 수정란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업체(연구소, 대학 등)를 통한 수정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자료 관리 :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암소에 대해 질병검진 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

□ 지원자금의 용도

- 수란우 입식비, 수정란 이식 관련 비용, 수란우 및 ET송아지 사양비, 친자확인비, 사육시설, 인건비, 소모성 기자재, 기타 수용성 비용 등
 - * 자체 수정란 생산조합은 공란우 입식비·사양관리비, 수정란 생산(구입) 비용, 수정란 생산 기자재비 등 포함
- 주요 지원내용

항 목	세부 내용
수정란 이식비 (수란우)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발정동기화 비용, 이식비 등
번식우 입식비	질병이 없고 생식기 문제가 없는 소는 일반가격의 130% 수준에서 구매
번식우 사양비 (수란우)	사료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방역비용 등 일반제비용
송아지 사양비	사료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방역비용 등 일반제비용
수정란 채란비 (공란우)	암소 임대비 포함 * 지역에서 우수암소를 선발하여 임신시키지 않고 수정란을 채취함에 따라 암소농가에 사료비 또는 송아지 생산비용 등을 지불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액 : 9,000백만원(3,000백만원 × 3개소)
- 지원형태 : 융자 100%(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연 2%)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대상 선정계획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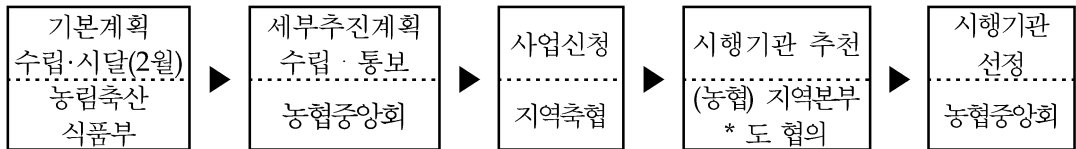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조합수	3	3	3	3	3	3	3	3	3	27

□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집행액은 인정되지 않음 : 세부사항 100p 참조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대상자(시행기관) 선정



○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참여 희망 지역축협은 지역단위 한우암소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관할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17.2월)
- 지역본부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1개 지역축협을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추천('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기관을 선정
 - * 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 해당 도, 선정위원 등
- 선정시 사업기반(한우암소검정사업 평가, 전문인력 보유), 사업규모(암소 보유두수, 수정란 확보계획), 사육환경(두당 번식우사 면적, 별도 분만우사·송아지방·환우방, 방역시설 보유 등) 등을 평가
 - * 선정위원(농협, 외부전문가) 출장비, 심사수당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통보('17.3월) :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는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및 해당 지역축협(3개소)에 선정사실 통보

마.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 축산발전기금사무국)와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NH농협은행)에 자금배정 통보

□ 농협중앙회 : 해당조합에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을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 정책자금 대출취급(NH농협은행)에 대출 신청 및 차입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협은 도의 협조를 받아 점검반(도, 농협중앙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현지점검 실시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 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농협은 사업기관의 업무중지,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물량의 변경, 선정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까지 농협중앙회에 보고
- 농협중앙회 :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종합평가

- 평가 기관 : 농협중앙회
- 평가 시기/기간 : 차년도 2월 실시, 전년도 1월 ~ 전년 12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주관기관에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개정시 반영

□ 만족도 조사

- 조사 기관/시기 :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 자금상환연도 1회 실시
- 농협중앙회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1]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행기관용)

1. 조합명 :

* 주소 :

2. 사업 목적

- 우수한 한우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3. 자금 신청액 : 3,00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융자 100%,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2%

4. 사업기간 : 2017. 1. 1 ~ 2019. 12. 31

5. 사업비 사용방법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 붙임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계획서

2017년 월 일

시행기관 : ○○축협 (인)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 귀하

(붙임) 2017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계획서 (○○축협)

담당자 : ○○○ (전화 :)

1. 지역축협 현황

① 한우사육 현황

관내 한우농가수 (명 / '16년말 기준)				관내 한우사육두수(두/ '16년말 기준)		
번식	비육	일관사육	계	번식암소	비육우	계

* 한우조합원수('16년말) : 명

* 관내 한우사육두수의 비육우는 암소비육 포함

② 기반사업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한우암소검정사업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참여 기간 ○년 ○○~○○년 ◆ 년 사업 실적 참여농가 호 관리두수 두 관리두수 중 조합 생축장 두수 두 평가결과 위 전체 ○○조합
한우육종농가사업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참여 기간 ○년 ○○~○○년 ◆ 년 사업 실적 참여농가 호 관리두수 두 관리두수 중 조합 생축장 두수 두
기타 사업	◆ ◆

② 생축장 현황

* 작성방법 : 해당항목 기입 또는 밑줄 표시

구분	내용	
사업장	◆ 주소 :	
	◆ 축산업 등록번호 :	
	◆ 부지 : m ² (방목장 m ²)	
	◆ 건물 : m ² (축사 m ² , 분뇨처리사 m ² , 사무실 m ²)	
사육규모 (15년말)	◆ 사육규모 : ○○○두 (번식우 ○○○두, 비육우 ○○○ 두)	
	◆ 가임암소 구성(1세이상) : 미경산우 ○○○두, 1산 ○○○두, 2산 ○○○두, 3산 ○○○두, 4산 ○○○두, 5산 이상 ○○○두 ⇒ 계 ○○○두	
	◆ 비육우 구성 : 암소비육 ○○○두, 거세우(수소포함) 비육 ○○○두	
축사구조	◆ 우군별 분리사육 현황 - 번식우사, 번식우 육성우사, 암소비육사, 거세우 비육사, 격리사, 기타()	
	◆ 번식우사 규모 : ○○○동, ○○○평, 두당 사육면적 ○○m ²	
	◆ 번식우사 구조 - 지붕 : 썬라이트(고정식, 개폐식), 기타() - 벽면 : 전체 원치커튼, 하부 콘크리트+상부 원치커튼, 콘크리트 밀폐, 기타()	
	◆ 번식우사 운영 - 번식우사 분만우사, 대기우사 구분 운영 여부 : 여, 부 - 번식우사 송아지방 구분 운영 여부 : 여, 부	
방목장	◆ 방목장 운영여부 : 여, 부 - (운영시) 방목시기 : 1년 내내, 한시적(○~월, ○~월), 기타() - (미운영시) 미운영 사유 :	
종사자	◆ 조합의 생축장 직접 종사인력 : ○명 (정규직 ○, 비정규직 ○) ◆ 조합의 간접 지원인력 : 수의사 ○명, 인공수정사 ○명, 기타() ◆ 외부 활용인력 : 수의사 ○명, 인공수정사 ○명, 기타()	
번식우 질병관리	◆ 브루셀라	
	◆ 우결핵	
	◆ 구제역	
	◆ HACCP	인증여부 : 인증, 미인증 / 인증시 최초 인증년도 : ○○○○년
	◆ 방역시설	보유현황 :
	◆ 기 타	

2.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추진 계획 (3개년)

구분		추진 계획
년차 년	수란우 확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수 ◆ 수란우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두 외부 번식암소 구입 두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두 외부 번식암소구입 두
	수정란 이식 및 임신 해당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란 확보 개 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자체 확보 세부내역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년차 년	수란우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수
	수정란 이식 및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란 확보 개 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자체 확보 세부내역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생산 두 ◆ 송아지 친자확인 두
년차 년	수란우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수
	수정란 이식 및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란 확보 개 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자체 확보 세부내역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생산 두 ◆ 송아지 친자확인 두

(첨부) 한우암소(수란우) 보유 내역 (기준일 :)

순번	개체식별 번호	종축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생년월일	계 대	부명호	모번호	산차	분만일	비고
							개체식별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등록구분은 미등록, 기초, 혈통 및 고등으로 표기

* 한우 암소 보유내역은 질병검진을 마친 암소의 내역과 동일해야 함

[서식 2]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구분	사업 실적	
1년차 (2017년)	수란우 확보 및 육성	◆ 두수 : ◆ 수란우 확보 방법 (1)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두 (2) 외부 번식암소 구입 ()두 (3)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두 + 외부 번식암소 구입 ()두
	수정란 이식 및 임신 (해당시 작성)	◆ 수정란 확보 ()개/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2년차 (2018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개/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1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두, 일치율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3년차 (2019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개/수정란 이식 ()개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개, 자체 확보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2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두, 일치율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 붙임 : 지원사업 실적서 및 증빙자료

2017년 월 일

시행기관 : ○○축협 (인)

(붙임)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년차 실적서 (○○축협)

1. 사업비 집행실적 세부내역

* 증빙자료 첨부

구분	세부항목	집행액 (천원)
번식우 시설비	사육시설	
	소모성 기자재	
	임차료	
번식우 입식비	번식암소 및 암송아지 입식비	
번식우 사육비	번식암소 및 송아지 사육비	
수정란 생산 및 이식비	수정란 채란비	
	발정동기화약품비	
	이식 시술비	
인건비	전담직원	
	동물병원장	
	지도계	
한우 개량	암소검정사업 자부담	
	개량(번식) 교육·컨설팅, 번식농가 지원	
	저능력암소 도태지원, 인공수정 지원	
	한우판별사업, 친자확인, 혈통등록	
	가축시장 혈통등록 송아지 거래 금액	
기타	기타사항	
합계		

2. 한우암소(수란우) 보유 내역 (기준일 :)

순번	개체식별 번호	종축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생년월일	계대	부명호	모번호	산차	분만일	비고
							개체식별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등록구분은 미등록, 기초, 혈통 및 고등으로 표기
- * 한우 암소 보유내역은 질병검진을 마친 암소의 내역과 동일해야 함

3. 수정란 이식(임신) 기록 관리

No	수란우 개체식별 번호	이식일	공란우 명호	KPN	수정란 번호	스트로 마커 (수정란정보)	임신 감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스트로마커 : 수정란 스트로 앞부분의 실링 플러그(수정란정보)를 붙임

* 기타 일반 인공수정 분만송아지도 동일하게 기록관리 (권고사항)

4. ET송아지 분만 기록 관리

No	수란우 개체식별 번호	ET송아지 개체식별 번호	이식 일	분만 일	성별	생시 체중	분만 형태	수정란 번호	공란우 명호	KPN	이모색	비경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분만형태는 정상, 난산 등으로 표시

* 이모색, 비경색은 정상, 이상유무를 표시

* 기타 일반 인공수정 분만송아지도 동일하게 기록관리 (권고사항)

5. ET송아지 친자확인 내역

No	수란우 개체식별 번호	ET송아지 개체식별 번호	수정란 번호	공란우 명호	KPN	성별	친자확인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젓 소 개 량

6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으로 젖소능력을 향상
- FTA를 대비하여 젖소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국산 젖소유전자원 수출로 국내 축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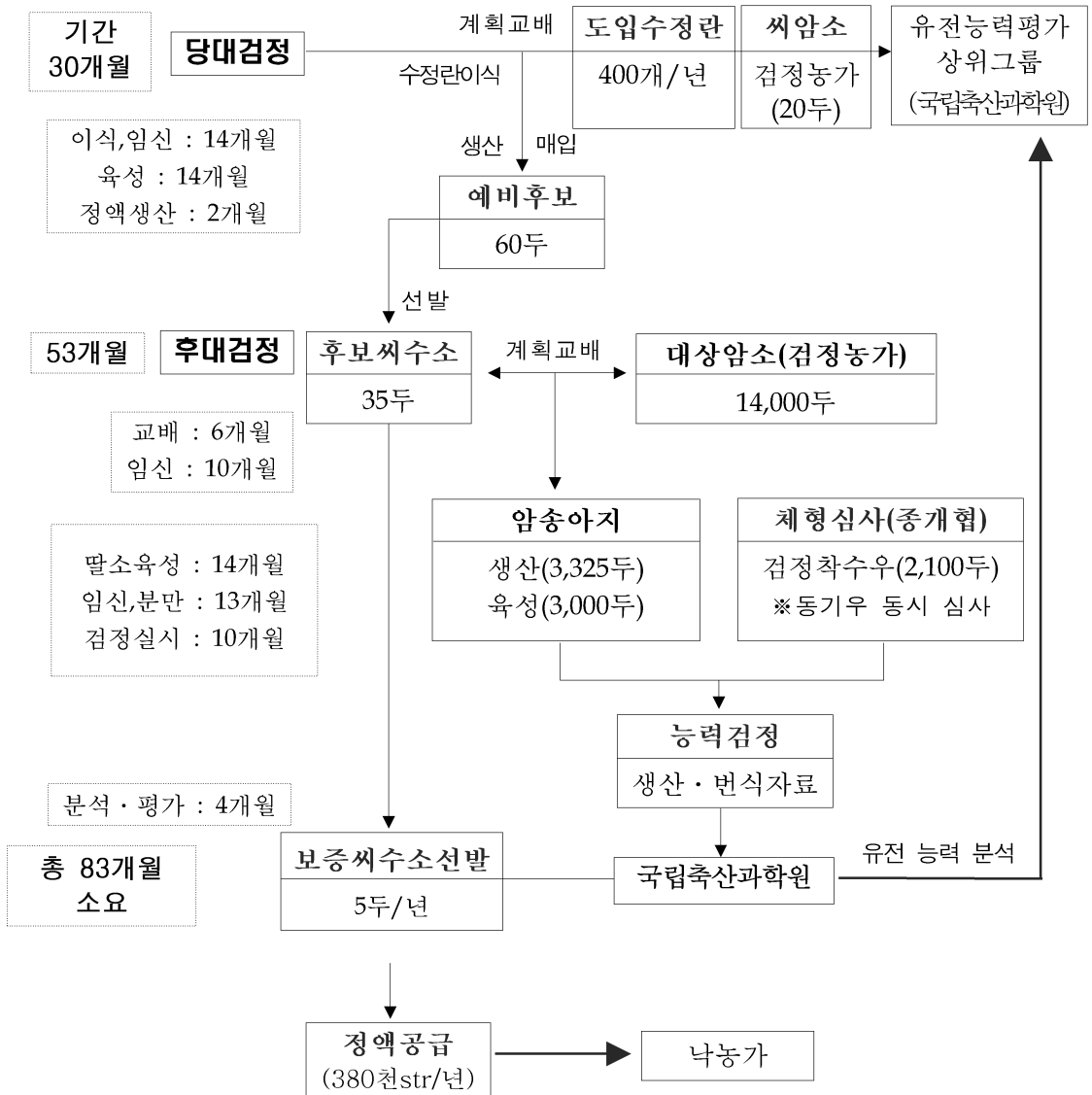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84,736	8,675	9,598	9,691	
- 보조	71,796	7,689	8,738	8,831	
-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2,940	986	860	860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임

* '15, '16, '17년도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지원요건

-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당·후대검정 사업을 실시하여 우량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량 씨수소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젓소능력검정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보조 지원
- 젓소정액 생산·공급
- 검정사업(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하여 보증씨수소 선발
- 외국산 보증씨수소 도입 등 국가자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용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정액생산·공급 및 수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 내용

< 당대검정 >

- 도입한 고능력 수정란을 국내 청정육종농가 암소에 이식하고 생산된 송아지 중 수송아지(3~7개월령)를 예비 후보씨수소로 확보
 - 청정육종농가에서 질병검진 및 심사 후 매입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예비후보씨수소의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 등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중 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교배암소에 후보 씨수소 두당 400두(800str 내외) 이상 교배
 - 목적 :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씨수송아지의 정액을 제공받아 후대검정딸소를 생산,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생성
 - 자격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중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0% 이상인 농가
 - 신청방법 : 후대검정 참여자격 농가 통보 → 사업참여 신청 (온라인) → 사업추진
- 생산된 딸소의 등록 및 능력검정 실시
- 생산된 딸소 및 동기군에 대한 외모심사 실시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결과를, 한국종축개량 협회는 혈통정보와 외모심사 성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젓소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 선발
- 한국형 보증씨수소 연차별 선발계획

연 도	'14	'15	'16	'17	'18
선발두수	2	3	3	5	5

< 젓소정액 생산 및 공급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전국 사육규모, 인공수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액수요를 예측하고 재고상황 및 보증씨수소 수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 생산된 정액은 정액성상 및 활력 등을 매일 검사하고, 보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 실시
- 생산된 정액은 전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 판매직원을 통하여 농가 및 인공수정사 등에게까지 안전하게 공급
- 농가 등에 공급되는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유전적 결함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 보증씨수소 도입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국내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두수를 정하고, 해외 유전능력 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도입 대상우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 젓소개량사업소가 제출한 도입대상우의 유전능력 평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대상우 결정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도입대상우 중 판매 여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젓소 정액 및 수정란 수출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젓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대상국 현지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

- 국제유전평가에 참여하여 국산정액의 객관적 우수성 증명 및 수출대상국(아프리카 등) 홍보에 활용
 - 홍보를 위한 현지 기술교육(개량,번식) 및 세미나 개최
 - 수출대상국 낙농가 및 정책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기자재(정액보관용 컨테이너, 인공수정 기자재, 운송비 등) 현지지원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젓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이 성사된 국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산업계 및 학계와 연계하여 국내 축산업의 동반진출에 협조

< 기타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검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보조금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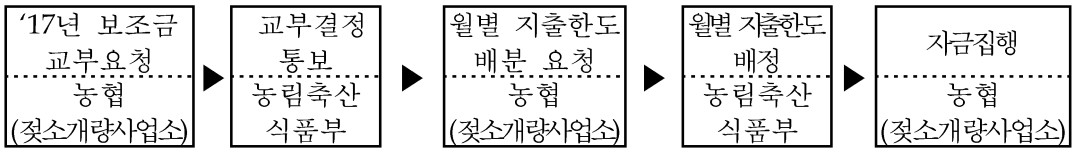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절차

- 농협 가축개량원 젓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 한도 배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젓소 씨수소 및 정액생산 관리 철저
 - 보증씨수소 및 후보씨수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발생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질병검사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것
 - 한국형 젓소 씨수소 정액생산 관리방안 마련·운영
 - 적정 관리기간 설정 및 운영으로 무분별한 장기간 사육 방지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등 대비 적정 재고관리
 - 사고축 발생에 대비한 위험보장 장치 마련
 - 국내산 정액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젓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17년 젓소능력검정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서식 1>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가 추진한 검정사업 및 젓소정액 생산·공급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부실방지, 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 평가대상 : 젓소 당·후대검정, 정액생산·공급사업
 - 평가항목 : 검정사업(후보우선발두수, 후대검정두수,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젓소 정액판매사업
- 환류
 - 선발 및 도입된 젓소 보증씨수소의 농가선호도 및 개량 기여도 평가 결과를 다음 차수 선발 및 도입에 반영
 - 우수한 젓소정액 공급으로 농가 만족도 제고 및 국내 젓소 개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강화
 - 유량, 유단백 등 젓소 유전형질 개량추세를 분석하여 낙농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서식1>

젓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씨수소 확보						
○ 수정란 도입	개					
○ 수정란 이식	"					
○ 씨수송아지 입식	두					
나.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암소 선정	"					
○ 딸소 생산	"					
○ 검정두수	"					
○ 보증씨수소 선발	"					
다. 정액생산 공급						
○ 씨수소 사육	두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씨수소 도입	"					
- 보증씨수소	"					
○ 정액 생산	천str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정액 공급	"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추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계									
○ 젓소개량									
○ 자산취득비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의 생산능력과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농가의 개량을 촉진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씨수소 개량과 함께 농가 젖소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03,436	9,863	9,775	9,667	
- 보 조	42,662	2,274	(2,187)	(2,079)	
- 용 자	-	-	-	-	
- 지방비	2,221	377	(377)	(377)	
- 자부담	67,426	7,211	(7,211)	(7,211)	

라.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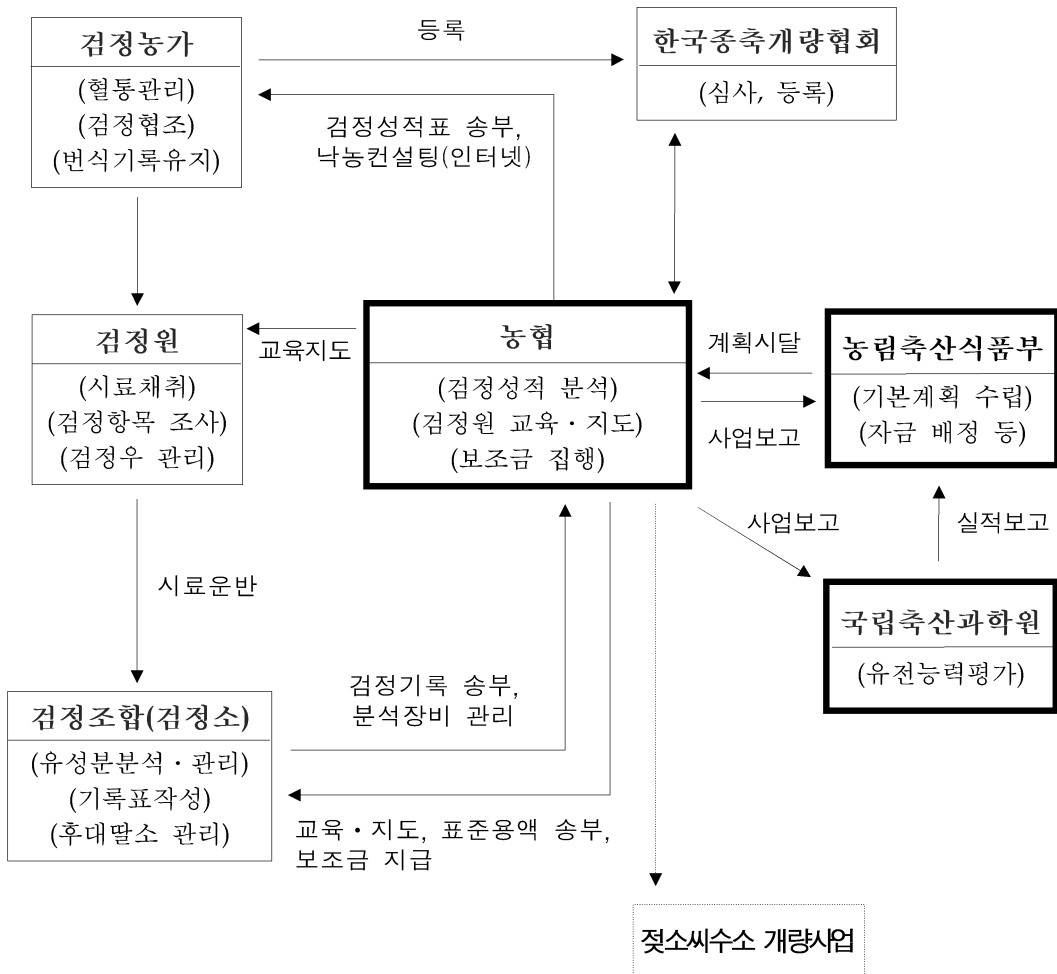
○ 검정소(조합) : 지역축협 · 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협조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마. 사업추진체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검정농가, 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요건

- 검정소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가 농가의 젓소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한 조합 및 단체
- 검정 참여농가
 -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가
 - 검정에 참여하는 젓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세부계획수립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17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17년도 세부추진계획을 검정조합(검정원) 및 검정농가를 대상으로 안내(교육) 실시

□ 사업신청단계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17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참여 희망 검정조합(검정소)에 안내('17.1월)
- 사업목적, 검정농가 신청자격, 신청기간, 관리조합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

- 검정조합은 농가에 검정사업 참여안내 및 신청접수 실시('17.1월)
- 검정조합은 농협에 사업참여 신청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 작성

□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17.2월)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7.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은 검정조합별 농가 교부결정 결과 보고('17.3월)
 - '17년 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참여농가 젓소의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유성분 분석자료 등 한국형보증씨수소 선발자료로 활용되는 검정비 및 재료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지급기준 : 검정결과 전산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기준으로 연간 두당 18,480원을 월별(월 1,540원 균등분할)로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지원하되 검정원은 반드시 유우균 검정우의 개체식별번호(바코드 귀표)를 조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혈통등록비율 70% 이상인 농가 중 '16년도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한하여 지급
- 단, 신규참여 농가의 혈통등록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구 분	보조금 지급 기준
신규 가입 1년이상 ~2년미만	혈통등록비율 20%이상
신규 가입 2년이상 ~4년미만	혈통등록비율 50%이상
신규 가입 4년이상 ~5년미만	혈통등록비율 70%이상
신규 가입 5년이상 ~	혈통등록비율 70% 이상, 후대검정사업 참여

- * 후대검정사업 참여여부는 연도별 후대검정정액 사용기간 내 사용한 내역을 유우균검정기록시스템에 등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사용실적의 전산 확인이 완료되는 '17년 7월부터 12개월을 지급대상 농가로 지정
- 보조금 지급제외 농가가 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검정사업 참여 가능
- *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된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지급허용
 -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의 개체정보(개체명호, 생년월일, 개체 이력제바 코드번호, 부모등록번호 등)를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입력하고 그 개체의 초종부 수정기록 입력 시 두당 1회에 한하여 1,540원 지급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될 경우 지원
- 비유기 중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해당 비유기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지 또는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조치
 - 다만, '17년도 유우균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또는 검정조합으로부터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을 승인받았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 회수 이상 산차 후 도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 쪼소에 대하여는 해당 비유기 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사업량 : 검정두수 110천두

○ 검정조합 사업의무

- 검정조합은 매월 검정기록표를 취합·정리하여 조사된 각종 자료를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유우군기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검정용 우유시료는 유성분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즉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유우군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정조합은 농협 젓소개량사업소가 지정한 원유분석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분석장비를 관리하고,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분석장비 표준화실태를 연 2회 점검
 -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한 표준용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조, 공급
 - * 표준화실태 점검결과 유성분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과 유성분 각각의 기준값(slope, bias 등) 중 2개 이상에서 연2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검정조합은 인근 원유분석조합(기관)에 검정샘플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다만,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 모두 부적합판정이 나온 검정조합은 즉시 검정샘플 분석을 중단하고, 인근 검정조합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 분석중단 조합은 익년도 검정사업 신청전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표준화 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전항목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분석장비 재이용 가능
- 검정조합은 검정우의 암송아지 생산 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력 시스템 귀표부착번호를 조사하여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
- 검정조합은 검정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함

○ 검정농가 사업의무

-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음
- 검정 당일에는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정농가는 검정우를 사업기간 동안(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사육 관리해야 함
 - * 다만, 젖소의 폐사, 기타 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정하고, 검정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젖소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해야 함
 - * 검정두수의 10% 이상(최소 10str 이상)을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교배시키고, 태어난 암송아지는 직접 사육하면서 반드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
 -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딸소들에 대한 친자감정 표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인공수정 내역(수정증명서 보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검정원에게 제시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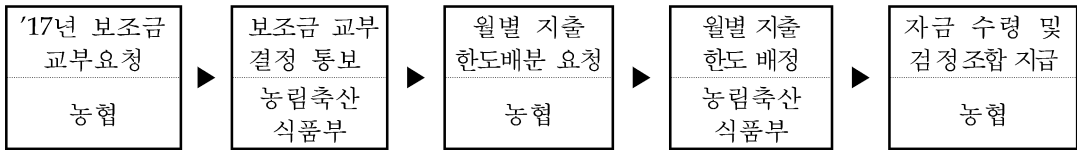
구 분	사업 물량 및 내역	금 액
○ 유우군능력검정		2,079
- 검정비	· 110천두×두당검정비용65,000원×보조율28.4%	2,030
- 재료비(시약)	· 검정소25개×163천원×12회	49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자금집행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매월 검정조합을 통하여 검정농가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 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을 검정조합별로 배분하여 통지
- 검정조합은 매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지도사업 수익으로 기표)하고, 지급대상 검정농가별로 산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 보조금 지급과 검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검정조합과 검정농가 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농가 현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점검대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2년 1회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 점검항목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운영현황(보조금 수령내역 및 집행현황) 등

□ 사후관리

- 농협 젃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참여조합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검정조합 지정 취소 등 사업참여를 제한
 - 검정사업 수행능력 부진시(검정입회 및 자료처리 부진, 검정자료 정확도 저하 등)
 - 검정사업 목적 및 검정요령 위배 등
 - 검정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검정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검정조합은 가급적 매년 1회 이상 유량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검정성적 신뢰도 향상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 '17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검정조합→농협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서식4
	농협→국립축산과학원→ 농식품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서식3
○ '17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정산 보고	검정조합→농협	'18.1.20	서식4
	농협→농식품부	'18.2월말	서식3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종합평가 실시

-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검정농가, 검정원, 검정조합을 시상함으로써 젓소개량의욕 고취
- 종합평가 방법
 - 주관기관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검정조합 참여실적, 젓소개량성과, 검정농가 관리성과, 유성분 분석자료, 검정자료, 검정입회 정확도
- 환류 : 사업부진 조합의 사업 시정, 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우군능력검정성적의 유전평가를 실시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검정조합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연간 유우군능력검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검정조합, 관련 기관 등에 제공

□ 만족도 조사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4월, 10월중
 - 조사대상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 40호 내외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나. 기타사항

□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18년도 유우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농가)은 사업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수요조사 : 관련 조직에 2018년도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2~3월경)
 - 제출기한 및 연락처 : 2017.3.30일까지, 031-929-1064

□ 2018년도 유우균능력검정사업 예고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유우균능력검정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서식 1>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주 소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전화	
	목장명		핸드폰	
젓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후대검정 참여대상 (두)	후대검정 참여시기	상반기/하반기	보조금교부 신청대상(두)	
조사료 재배면적 (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농가혈통 비율(%)		유우군검정사업 참여개시년도		
신청 구분	(기존 참여농가/ 신규 신청 / 검정사업 탈퇴후 재신청) 으로 구분			

보조금 교부 신청 대상개체는 유우군검정기록 전산시스템의 자료로 같음하며 위와 같이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귀하

<서식 2>

2017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계획

1. 2016년도 사업실적

가. 사업실적

1) 검정우 관리실적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2) 보조금 지급두수 실적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실적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재원별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무이자 자금	지방비	농가 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비 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 업 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계		

다. 추진상 문제점

-

2. 2017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1) 검정우 관리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2) 후대검정사업 참여 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3) 기금 보조금 지급 두수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계획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소요경비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 무이자자금	지방비	농가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업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		
계			

다. 검정원 현황

이 름	검정지역	검정농가수	검정두수	기타
명			두()*	

주. * ()내는 1인당 평균관리두수임

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서식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중앙회용) 보고(/4분기까지)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소 운영 ○검정원 ○검정농가 ○검정두수 	개소 명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서식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조합용) 보고(/4분기까지)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단위	연간계획	(/4분기까지) 실적
○검정원 - 전담검정원 - 촉탁검정원 - 전산입력원	명		
○검정농가	호		
○검정두수	두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원

구 분	재원 조달 내역(/4분기까지)					계
	보조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	농가부담		
○ 유우군능력검정 사업비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유전적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암소집단을 확대
 - 고능력 수정란을 청정우군에 이식하여 후보 씨수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암송아지는 유전평가 후 씨수송아지 생산용 씨암소로 활용
- 낙농가의 개량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능력의 보증씨수소 생산으로 국산정액 판매 활성화 및 수출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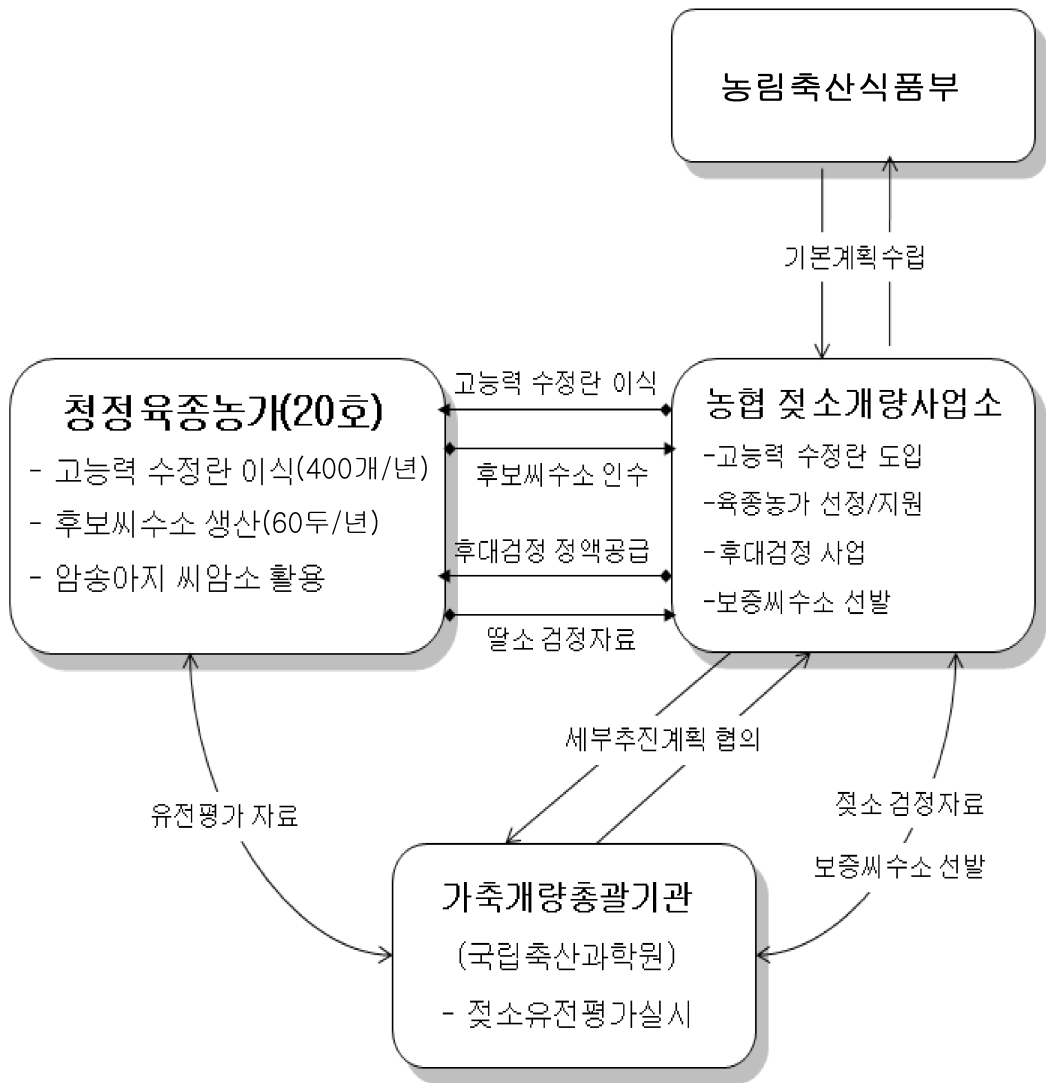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870	1,770	2,687	2,461	2,461
- 보 조	870	1,770	2,687	2,461	2,461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젖소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로 농협 젖소개량 사업소로부터 지정받은 농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

- 경산우 40두 이상(건유우 포함)을 사육하고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5% 이상인 농가
- 보유한 모든 소(생후 8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젓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 *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검진대상 질병의 검진결과,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단, 청정우군 조성을 목표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농가 또는 조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허용
 - 질병이 없는 수정란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경산우 40두 이상 규모의 우사와 부지를 확보하고 동 규모의 착유 시설 신축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 정기적인 질병검사로 지속적인 청정우군 유지가 가능한 농가
 - 청정우군 유지를 위한 방역시설을 보유한 농가
 - 장기적인 사업참여 가능 농가(축주연령, 후계자 여부 등)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청정육종농가 선정방법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관련 대학 및 기관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연중)
 - 사업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서식 1)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 신규 참여 청정육종농가 : 참여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연중)
- 청정육종농가 선정절차
 - 사업홍보추진(연중) ⇒ 사업참여 수요조사 ⇒ 농가 질병검진 ⇒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장심사 ⇒ 사업계약 추진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 육종농가 지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 질병검진, 수정란 이식, 연구용역, 농가 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질병검진 완료 농가 중, 부득이한 사정(도태대상우 다수발생 등)으로 청정화 완료시기가 지연되어 질병검진비용이 과다 발생한 경우 청정육종농가 선정완료 후 육종농가가 기지급한 검진비용의 일부 및 우군 청정화에 따른 도태장려금 지원 가능
- 젓소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젓소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농가에 개량장려금 지급
- 수정란 생산·공급시설 설치
 - 암소개량 가속화를 위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수정란을 체계적으로 생산·공급 하는 시설 설치 지원

◆ 시설내용 :

- 구조 및 건축면적(㎡) : 일반철골조, 3,559㎡
- 암소계류장 : 30두 규모 개방형 톱밥우사
- 수정란 채란시설 : 수정란 채란을 위한 보정시설 및 암소유도책, 항온실, 수정란 검사를 위한 실험실, 창고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 고능력 수정란 도입,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사업비 보조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역할
 - 우수 젓소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젓소 청정육종농가 모집·선정 및 지도·운영
- 우수 젓소 암소를 보유한 검정농가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젓소 청정육종농가 사업에 활용

□ 젓소 청정육종농가 사업량 : '20년까지 20호 선정 계획

(단위 : 호)

구분	'16년이전	'17	'18	'19	'20	누계
청정육종농가	16	1	1	1	1	2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고
고능력 수정란도입	400개	863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400개×\$1,900×1,135원)
육종농가 운영	16호	598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 관련, 교육, 개량 장려금, 질병검진, 수송아지 사양비, 청정 우군 조성 및 유지, 관련 용역 등
수정란 생산·공급시설	1개소	1,000	개방형 톱밥우사, 수정란 채란시설 등
합계		2,461	

* 젓소 청정육종농가 사업비는 젓소능력검정(정액생산·공급) 사업에 포함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젓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점검 실시
 - 점검대상/횟수 : 젓소 청정육종농가,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관리우 질병관리 현황, 송아지 생산두수, 후대검정
딸소 생산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현황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농가에 제공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청정육종농가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의 젖소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젖소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침 및 계약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젖소 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결과보고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젖소육종농가사업 분기별 사업실적을
(서식2)에 따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목적 : 젖소육종농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부진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부실 방지 및 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기관/기간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해당연도 젖소육종농가(신규 참여농가는 제외)

- 평가항목 : 검정사업 참여현황, 수란우 관리현황, 정기 질병검진결과,
송아지 관리현황(분만율, 육성율, 인수율, 혈통등록등), 사업 협조여부 등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젖소육종농가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서식1>

젓소육종농가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목장명		생년월일	
목장소재지		전화번호	
자택소재지		휴대전화번호	

2. 사업신청내용

젓소 암소 사육두수			혈통·고등등록우	
총사육두수	미경산우	경산우	경산우 ()	미경산우 ()
두	두	두	두(%)	

※ 총사육두수 : 암소사육 전두수

3. 일반현황

축사 기타	축사 면적		방역시설	
	동 평	동 평	차량(), 대인()	
검정 현황	검정소		검정두수	
			검정시작년도 년	

4. 첨부서류

- ① 서식 제 호 서식 젓소 암소 보유내역서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 ② 축산업 (허가)등록증(서) 사본
- ③ 방역시설 사진(보유시)
- ④ 질병검진항목에 대한 검진결과통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농협 가축개량원 젓소개량사업소 귀하

<서식2>

젓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젓소육종농가육성사업 ○ 고능력수정란 도입 ○ 고능력수정란 이식 ○ 청정육종농가 선정	개 개 호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젓소육종농가육성 ○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육종농가 운영									

<서식3>

젖소육종능가를 활용한 보증씨수소 선발 체계도

구 분	소요기간 (개월)	세 부 내 역				
수정란이식 (4개월)	0 ~ 14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육종농가 20호</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00두</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고능력 수정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00개</td></tr> </table>	육종농가 20호	400두	고능력 수정란	400개
육종농가 20호						
400두						
고능력 수정란						
400개						
임신기간 (10개월)	↓					
질병검사& 씨수송아지 매입 (4개월)	15 ~ 18	<p style="text-align: center;">※ 400두 이식 × 수태 · 생존율(30%) = 120두(♂ 60두, ♀ 60두)</p>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예비 후보</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60두</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고능력 씨암소 재활용</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6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유전평가후 씨암소로 선발</p>	예비 후보	♂ 60두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 60두
예비 후보						
♂ 60두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 60두						
당대검정& 정액생산 (12개월)	19 ~ 36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보 씨수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5두</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배암소(육종농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14,000두 (♂ 35두 × ♀ 400두)</td></tr> </table>	후보 씨수소	♂ 35두	교배암소(육종농가)	♀ 14,000두 (♂ 35두 × ♀ 400두)
후보 씨수소						
♂ 35두						
교배암소(육종농가)						
♀ 14,000두 (♂ 35두 × ♀ 400두)						
암소선정& 교배 (6개월)	↓					
암소 임신기간 (10개월)	37 ~ 46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생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325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14,000두 × 45%(분만율) × 50%(성비)</p>	후대검정 딸소 생산	♀ 3,325두		
후대검정 딸소 생산						
♀ 3,325두						
암소육성 & 임신,분만 (27개월)	47 ~ 73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육성</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00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3,325두 × 65%(육성율)</p>	후대검정 딸소 육성	♀ 3,000두		
후대검정 딸소 육성						
♀ 3,000두						
암소검정 & 유전평가 (10개월)	74 ~ 83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보 씨수소 유전평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5두</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2,10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후보씨수소 1두당 딸소 60두</p>	후보 씨수소 유전평가	♂ 35두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 2,100두
후보 씨수소 유전평가						
♂ 35두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 2,100두						
보증종모우 선발 & 활용	83 (6.9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보증씨수소 선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5두</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액공급</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낙농가</td></tr> </table>	보증씨수소 선발	♂ 5두	정액공급	낙농가
보증씨수소 선발						
♂ 5두						
정액공급						
낙농가						

돼지 개량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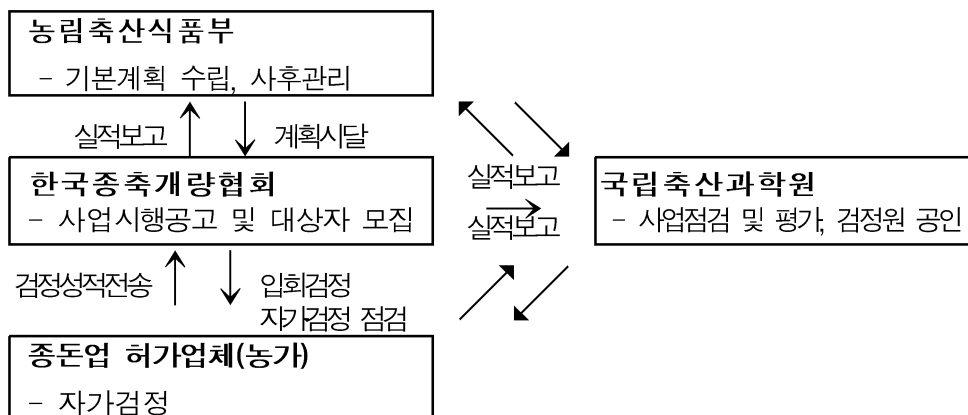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3,799	272	297	290	
- 보 조	2,264	172	200	200	
-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635	100	97	90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농장검정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종돈업 허가 농장이 능력검정원 확보시 자가검정 가능

□ 농장검정 종류 : 입회검정, 자가검정

- 입회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직원이 농장입회하여 검정
- 자가검정 : 공인된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허가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정

□ 검정비 지원 제외 대상

- 2016년 검정참여실적 등에 따른 검정비 지원 제외
 - 2016년 검정돈의 모돈 두수 합계가 50두 미만인 경우
 - 2016년 검정참여 모돈 복당 검정두수가 2두 미만인 경우
- * 단, 신규농장의 경우 GGP 모돈 규모 50두 미만 농가
- 자가검정 종돈장이 사업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입회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검정성적을 미제출한 경우(검정종료일부터 1개월 내)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검정유형, 검정방법 및 주기 등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중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농장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간계획 수립

□ 선정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 및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농장검정 신청을 받아 물량 배정

□ 추진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17.2월)
- 사업주관기관의 소속검정원은 계획(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입회검정을 실시하고,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자가검정을 실시한 후 검정성적을 사업주관기관에 전송
- 사업주관기관은 입회검정 성적 및 전송받은 자가검정 성적을 이용하여 D/B를 구축하고 적정여부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집행
 - 매주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성적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돈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

- 사업량 : 62,000두(입회검정 7,000두, 자가 55,000두)
- 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 씨돼지

□ 사업내용

- 농장검정 대상돈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채래돼지, 합성돈(국립축산과학원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를 대상으로 실시
- 검정돈 조건에 부합되는 개체를 대상으로 체중이 90kg 전후에 도달했을 때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 조사
 -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1.0kg)/(종료일령)으로,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사
- 사업주관기관은 주간단위로 검정자료를 수집한 후 검정성적 및 유전능력 평가결과 자료를 공표
 - 농가발송, 홈페이지 및 종돈개량지에 게재하여 홍보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장검정비 : 200백만원
 - 입회검정 10,000원/두(50% 보조), 자가검정 4,000원/두(75% 보조)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점검 실시(1회/년 이상)

- 점검대상 : 농장검정 실시농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가들의 부당행위 사전방지, 사업만족도, 건의사항 등 수렴
- 점검항목 : 농장검정 실시현황(규정에 의한 검정실시)

□ 자가검정농가 점검(1회/년 이상)

- 사업주관기관은 자가검정농가가 가축검정기준(농식품부고시 제128호, 2014.12.30)에 따라 적정한 검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자가검정농가 입회점검표(서식2)에 의거 점검
- 점검시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 결과 보고 및 정산

- 국립축산과학원에 분기별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을 보고(서식 3, 4)하고, 농장검정보고회, 교육, 홍보, 지도 및 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장검정사업 평가 : 농장검정사업 실적 및 개량추이를 분석

- 평가대상 : 농장검정 실시 농가
- 평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 추진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농장검정사업 보고회 : 농장검정결과 보고를 통한 개량성과 도출

- 개최시기 및 횟수 : 4~5월, 1회/년
- 참석대상 : 종돈업체 및 관련업체 등 100명
- 홍보 : 신문, 월간지 등 종돈개량성과 홍보

나. 2018년 사업예고

□ 2017년 검정 참여비율 등에 따른 2018년 검정비 지원 제외

- 연간 검정참여 모돈 두수가 50두 미만인 경우
 - 검정참여 모돈 두수는 2017년 검정돈의 모돈 두수 합계
- 연간 검정참여 모돈 복당 검정두수가 2.5두 미만인 경우
- 자가검정 성적을 검정종료일로부터 3주(21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기간을 초과한 검정종료돈 검정비 지원 제외)
- 2017년 실적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서식 1>

2017년도 종돈농장검정사업 계획서

1. 농장현황

농장(기관)명		대표명		핸드폰	
대표전화		팩스		농장식별번호	
검정담당자		직책		핸드폰	
경영형태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영농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육형태	전문GGP <input type="checkbox"/> 전문GP <input type="checkbox"/> GGP+AI센터 <input type="checkbox"/> GGP+GP <input type="checkbox"/> GGP+GP+PS <input type="checkbox"/> GP+PS <input type="checkbox"/>				
돈사현황	번식사	육성(비육)사	검정사	총건물	비고
	개동	개동	개동	개동	
노동력	자가	고용	합계	작성일	
	명	명	명	작성자	

2. 사육규모(모돈 및 옹돈)

구 분	모돈 두수						옹돈 두수					
	L	Y	D	B	H	기타	L	Y	D	B	H	기타
순종생산용												
F1생산용												

1) F1 모돈을 이용하여 비육돈을 생산하십니까? (예 , 아니오)

2) 비육돈을 생산하신다면 F1모돈 두수는? (두)

3. 농장특이사항(검정두수 증감요인 기술- 가능한 상세히)

4. 검정형태(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회검정: 검정기관직원 출장검정 ()

자가검정: 농장내 공인능력검정원 검정 ()

5. 검정용 초음파기계 방식(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A-모드 : 디지털방식() B-모드 : 화상방식()

6. 2017년도 월별 농장검정 계획두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서식 3>

중돈농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단위 :두)

세부사업량	2015년	2016년	2017년			진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비(/4분기까지)									
			축발기금			농가자담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서식 4>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검정 구분	품종	성별	검정기관 (농장)	검정원 이름	초음파 모델명	개체 번호	생년 월일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검정개시		검정종료		등지방 두께 (mm)	90kg 도달일령 (일)
			날짜	체중 (kg)	날짜	체중 (kg)		

※ 검정구분 : 입회, 자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목 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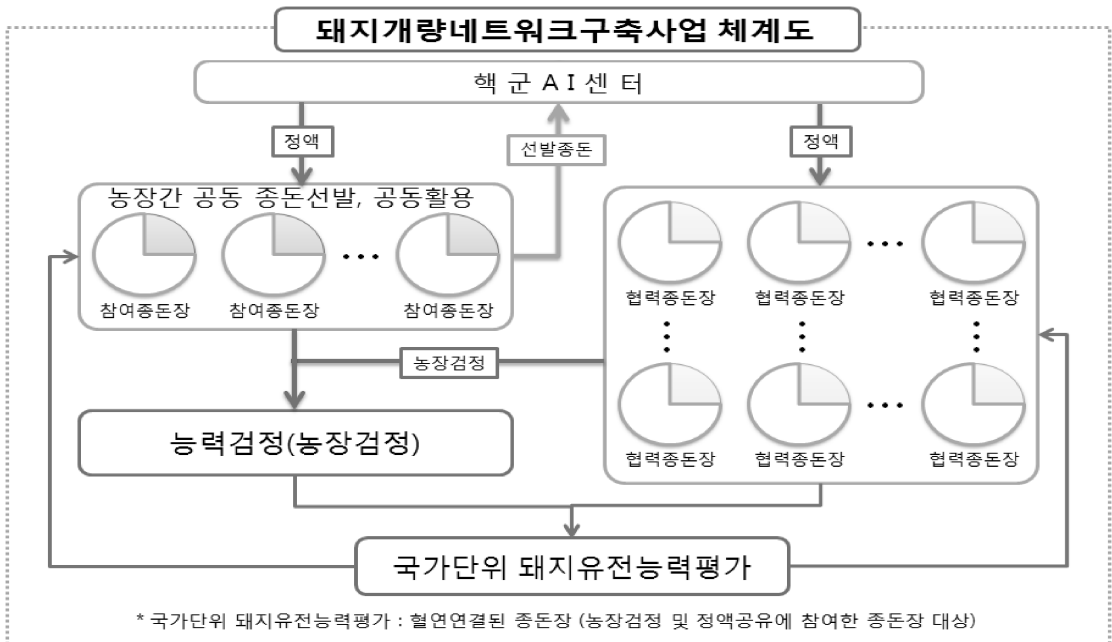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3,671	1,431	1,603	1,303	
- 보조	3,671	1,181	1,353	1,053	
- 용 자	-	-	-	-	
- 지방비	-	(250)	(250)	(250)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축개량 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 우수 돼지 유전자원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돼지인공 수정센터(AI센터)를 통한 고능력 종돈 이용 선순환 체계 마련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지원요건

< 참여종돈장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규모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협력종돈장 >

- 대상품종의 순종 모돈 두수가 50두 이상 규모인 종돈업허가업체
 - * 질병·방역 관리는 사업시행기관이 참여종돈장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핵군AI센터 >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수정액등처리인증업체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기관은 2017년 동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추진계획 및 모집공고를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게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행기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우수종돈 구입비(우수종돈농가 보급사업)

라.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참여·협력 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 상위 2%이내 종모돈을 선발하여 질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사업시행기관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계획교배(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를 실시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 여부 및 결과 확인

- 국립축산과학원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2회/월 유전능력평가(부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 대상자에 통보

□ 지원형태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우수종돈 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보조(1,000만원/두)
- 수태지 검정 지원비 : 검정완료 수태지 탈락돈에 대해 시세차액의 80% 보조('15년도 평균시세 기준)
- 질병검사비 : 사업대상자가 수행한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100% 보조
- 친자감정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친자감정비 100% 보조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의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보조(3,200원/복)
- 운영비 : 회의수당 및 회의비 등

□ 지원방법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이내)
 - 지원방법
 - 핵군종모돈으로 선정된 돼지를 구입한 핵군AI센터는 사업시행 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시·도 위생시험소 또는 국립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우수종돈 개량지원비

- 지원기준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개량지원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4주 이내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 수태지 검정 지원비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태지
- 지원방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태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적정성이 확인된 신청 종돈장에 보조금 지급

○ 질병검사비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구 분		질 병 검 사		대 상	비 고
정기검사	검사항목	PRRS (1,2,4,5,7,8,10,11월)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3,6,9,12월)	핵군AI 센터	
	검사시료	혈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종돈입식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항원)	핵군AI 센터	핵군용종돈 : 입식전 (농장), 입식후 2일, 2 주, 4주 일반용종돈 : 입식전 (농장), 입식후 2일, 2 주, 4주	
	검사시료	혈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정액공유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 일본뇌염, 파보바이러스, 톡소플라즈마병, 렘토스피라병(10종항원)	핵군AI센 터	정액을 채취한 해당 종돈의 정액으로 질 병검사 실시	
	검사시료	정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육질검사비

- 지원기준 :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의 검정종료돈 중 선발에서 탈락된 종돈의 육질검사비(pH24, 이화학, 시료보상 등)
- 사업시행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 국립축산과학원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본 사업에서 정한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수행한 경우
 - * 입력항목 : 교배웅돈, 교배일(교배횟수), 산차, 분만일, 정상(암), 정상(수), 사산, 기형, 체미, 미라, 생시체중, 이유일
- 사업시행기관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입력한 항목을 확인한 후 모든 필수항목이 입력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친자감정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친자감정을 위한 DNA 분석비

- 사업시행기관은 친자감정용 DNA분석을 위해 참여업체 종돈의 모근 또는 조직을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 운영비 : 사업시행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 참여업체의 의무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5두/복당)
 -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 1두/복당), 모계(♀ 1.5두, ♂ 0.25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핵군AI센터 >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을 참여종돈장에서 구입하여 청정화를 유지하고 참여 및 협력종돈장 모든 두수의 15%이내로 정액을 무상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7년 사업비 : 1,3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지원형태
사업비	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우수종돈 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인센티브(1,000만원/두) ○ 해외 우수 유전자원 구입비 : 70% 보조 ○ 수태지 검정지원비 : 검정결과 탈락된 수태지는 시세차액의 80% 보조('15년 평균시세 기준) ○ 질병검사비 :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100% 보조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정한 모든 필수항목 입력시 보조(3,200원/복) ○ 친자감정비 : 100% 보조
운영비	59	○ 회의수당, 회의비, 출장여비, 인건비 등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종돈 구입비	250	○ 유전능력(검정결과) 등에 따라 차등(마리당 500~1,000천원)하여 지원
합 계	1,303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 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 협력종돈장의 참여종돈장으로 변경 시,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대해 월 2회 유전능력 평가(부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교배에 활용하도록 지도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
 -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조치

- 국립축산과학원과 사업시행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 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원된 사업비 회수
 - 종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탈퇴한 해로부터 과거 2년내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
 - 다만, 참여업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업참여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
-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보조금 회수 및 장비 반납조치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8.1월)

②	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16.12월 현재)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7(4)	1(1)	4(2)	14(5)	6(3)	3(1)	1(1)	1(1)	4(0)	4(2)	2(0)	47(20)

* ()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수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2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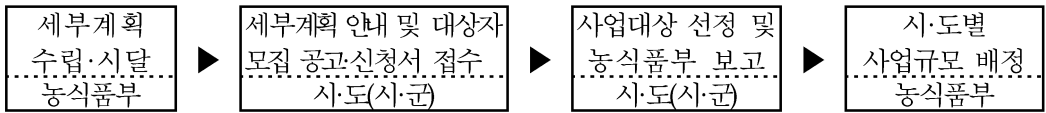
< 우수종돈 기준 >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 종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 결과 상위 30%이내 종돈
 -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3일령 이내(단 등지방두께 1.5cm이하)
- 국립축산과학원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랜드레이스, 요크셔)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
 - 동북 생존 산자수* 14두 이상,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
 - *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신청 단계 >

□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 (서식 7)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2개소 내외*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 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제공하는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정액증명서 발급 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라.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250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500~1,0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Index)	3.5이상~4.5미만	4.5이상~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500천원	750천원	1,000천원

* 선발지수 = 90kg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 (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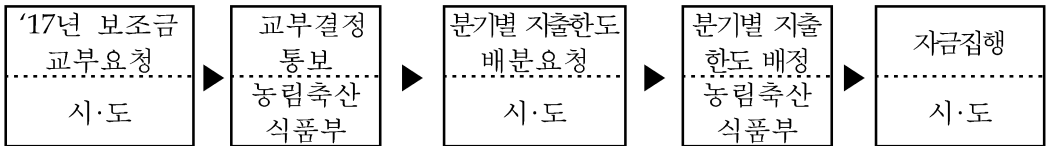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 750천원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국립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8)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16.12.1~2017.11.30

* 신청업체는 종돈구입 및 정액판매 내역 등을 돼지통합시센터프로그램에 입력

- 부계통(두록) 지원대상 종돈 여부는 매월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하여 신청

* 국립축산과학원은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시·도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

- 시·도는 신청 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 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시·도(시·군)가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제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서식 9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평가기간/대상 : 당해 연도, 참여 · 협력 종돈장
 - 평가항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나. 기타사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

<서식1>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종돈업등록번호	
업체명		전 화	
주 소			

2. 사업신청내용 : ①참여종돈장 ②협력종돈장 ③핵군AI센터

3. 일반현황

종돈 사육 현황 (두)	모든 두수(AI센터는 옹돈두수)							
	L	Y	D	B	재래돈	기타	계	비고

4. 첨부서류

- ① 질병검사결과 1부(최근 1년)
- ②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또는 우수종축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③ 자돈등기, 검정, 분양실적 1부
- ④ 축사소재 위성사진, 설계도면, 축사입구전경, 방역시설, 탈의실, 샤워실 사진 등 1부
- ⑤ 근무자 관련 학위, 종돈업체 근무경력, 축산관련 자격증 등 1부

위와 같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2>

핵군시센터 우수종돈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우수 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90kg도달일령/ 총(생존)산자수	지급대상 확인
1					
2					
3					
4					
5					
6					
7					

※ 90kg도달일령/총(생존)산자수

※ 지급대상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 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3>

수태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수태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수태지 검정 지원 신청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지급대상 확인	비고
1					
2					
3					
4					
5					
6					
7					

※ 지급대상 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지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위와 같이 수태지 검정 지원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4>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협력 종돈장 의무이행각서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종돈장 , 협력종돈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모든 두수의 10%이상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선발된 핵군종 모돈 정액을 이용하여 계획교배 실시(선발된 종돈의 정액 최소 1회 사용)
 - 참여모든이 생산한 자손 중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한다.
 -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2부/복당, 모계 ♀3두, ♂0.5두/복당 이상
 -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1부/복당, 모계 ♀1.5두, ♂0.25두/복당 이상
 - 참여모든 전두수 자돈등기를 실시한다.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관·시행기관에서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조치 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부당행위, 사업부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집행 된 보조금은 회수 및 반납한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5>

질병검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질병검사 내역

연번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질병검진항목					추가 검진항목	기타
			돈열병	오제스키	구제역	브루셀라	PRRS		

※ 신청대상돈이 많은 경우 질병검진결과 내역 첨부 가능

4. 첨부서류 : 질병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질병검사결과 및 청구서류 사본 1부

위와 같이 질병검사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6>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 위	2014	2015	20106년			진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개소 복 두 두 두 두 두							
- 참여업체								
- 정액공유								
- 검정(수)								
- 검정(암)								
- 육질검정(육안)								
- 육질검정(이화학)								
- 종돈선발								
모계	개소 복 두 두 두 두							
- 참여업체								
- 정액공유								
- 검정(수)								
- 검정(암)								
- 육질검정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택지검정지원비								
- 우수 종돈구입비								
- 해외유전자원도입								
- 질병검사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별비								
- 정액택배비								
○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 자산비								
- 등지방축정기, 돈형기 등								

<서식 7>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주 소	
업체명		전 화	

2. 일반현황

종돈 현황 (두)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기 타	계	
시설	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인증 현황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여부 :						

※ 첨부서류

- 축산업허가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축사의 건축물 대장(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정액의 품질관리 및 위생·방역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검사서, 정액 채취·검사 실적, 인력 및 시설현황 자료를 별도 첨부

3. 구매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구매 종돈장													

* 종돈 구매두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로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서식 8>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선발지수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서식 9>

우수중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우수중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중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4분기)까지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 우수중돈 농가보급 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중돈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목 적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 개량방향 제시 및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우량 암소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능력 검정·평가와 함께 체형형질 심사를 활용
- 개량농가에 선형심사를 활용한 선발·도태 및 계획교배 정보 제공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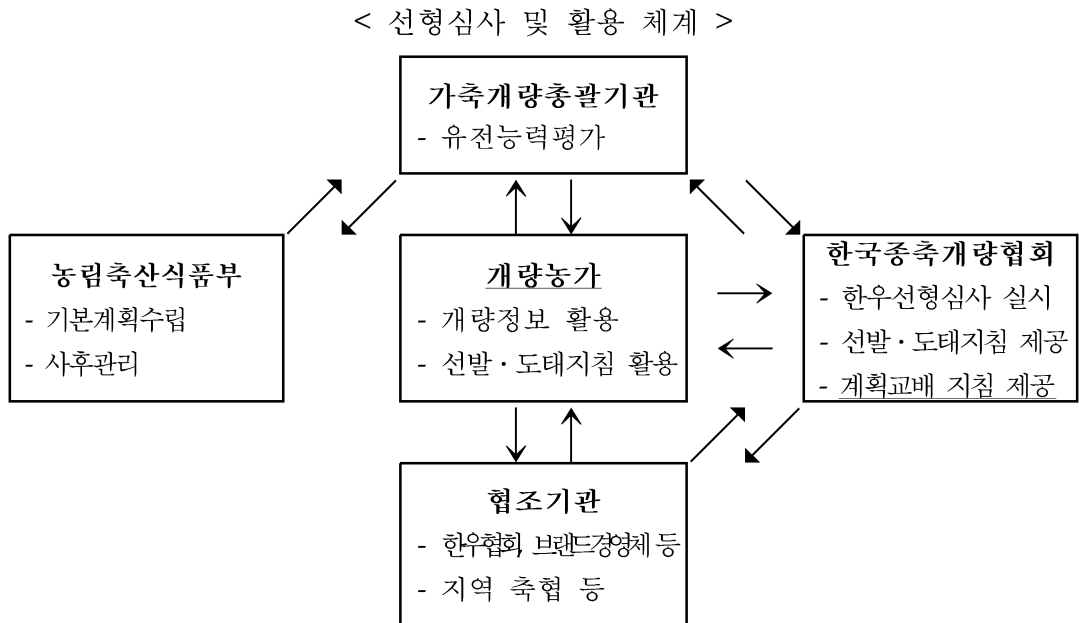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229	500	500	500	
- 보조	720	150	150	1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509	350	350	350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한우암소검정참여농가 및 번식농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등록된 가축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선형심사비 : 선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보조

□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신청농가의 자격기준을 검토 후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선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 사업대상 선정 : 기초등록 이상우로서 한우암소검정 참여농가 및 번식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함
- 심사대상우 : 우군심사(농가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1산차 이상 분만기록이 있는 기초등록 이상인 개체
- 심사형질 : 개체정보, 일반외모, 자질, 전구, 중구, 후구, 지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 농가를 방문하여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선형심사 결과를 D/B로 구축
- *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형심사 결과표 및 개체별 개량요망부위가 기재된 계획 교배용 씨수소 선정표를 농가에 제공하고 선발·도태의 지침으로 활용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 : 3,000원/두
- 지원 범위 : 한우 선형심사비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1회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선형심사 성적을 분석하여 성적표를 농가, 지역조합에 제공

□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혈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대상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선형심사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심사 성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선형심사 결과에 따른 한우개량 활용도 및 경제성 분석 포함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한우 선형심사 결과보고회 개최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개량부)는 선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우선형심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축협 및 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 참여대상 : 해당연도 참여 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선형심사 실적, 선형형질 19개 형질, 등급형질 6형질
- 환류 :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량성과가 낮은 사업대상자는 '18년 사업참여 제한

<서식 1>

한우선형심사 신청서

조합명 :

사업물량(경산우)

- 농가호수 :

- 신청두수 :

담당자 :

○ 사무실 :

○ 휴대폰 :

○ 팩스 :

심사희망일자

구분	심사희망일	농가호수	두 수	비 고
1차				
2차				
3차				

※1인 1일 심사두수 : 80두 내외(경산우 20두 규모, 4농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귀하

<서식 1>

한우선형심사 신청서

조합명 :

사업물량(경산우)

- 농가호수 :

- 신청두수 :

담당자 :

○ 사무실 :

○ 휴대폰 :

○ 팩스 :

심사희망일자

구분	심사희망일	농가호수	두 수	비 고
1차				
2차				
3차				

※1인 1일 심사두수 : 80두 내외(경산우 20두 규모, 4농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귀하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목 적

- DDA·FTA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가축개량 기술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력 향상
 - 개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개량, 초음파, 컨설팅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개량농가·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하여 고유 유전자원 보호 및 고급육생산 기반 확충
- 전문화된 농가 지도요원 육성으로 신기술의 보급 효과 확산 및 내실있는 가축개량지원 사업 추진
- 축산분야 R&D 과제의 사전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00	200	200	200	200
- 보 조	180	180	180	175	175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20	20	20	25	25

라.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원
- 교육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
종축개량협회 등
- 교육대상 : 한우 및 젃소농가,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조합 지도원,
개량기관 소속직원, 학계·연구기관·업계 종사직원 등

마. 사업추진체계

구 분	기관명	주요업무	비 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업 주관기관 세부 기술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국립축산과학원	○교육사업 세부 추진계획수립 ○교육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교육기관 사업비 배분, 교육계획 변경 검토 및 승인 ○사업 평가 및 환류	
시행기관	농협 가축개량원	○사업비 집행 및 교육기관별 정산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교육기관	교육시행기관	○교육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사업비 신청 ○교육결과 및 정산 보고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교육기관
 - 가축개량기관 중 관련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농가 및 지도원 등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기관

-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축산분야 R&D 추진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신청한 기관

○ 교육대상

- 양축농가 : 한우 또는 젓소 사육농가로 교육참석 희망서 제출 농가
-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하면서 검정참여농가 가축 검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검정요원
- 조합 지도원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중인 지도원
- 가축개량 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기관에 근무중인 직원
- 학계, 연구기관, 축종별 연구회, 관련업계 근무중인 직원
- 기타 : 일반인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람

나.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수요조사

- 국립축산과학원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수요조사 실시('17.2월)
-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신청('17.2월)

□ 대상자 선정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기관별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17.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 후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확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통보
- 국립축산과학원은 확정된 교육계획을 농협 가축개량원 및 각 교육기관에 통보('17.2월)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개량기술교육 신청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 미래축산포럼 신청기관의 포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라. 사업량 및 지원조건

□ 교육비 지원기준

-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제출한 “가축개량기술교육 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기관별 가축개량 기술교육비 예산 및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농협 가축개량원에 통보
- 교육 인원, 기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지원방법

- 농협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교육비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아 해당 교육기관 법인 통장으로 교육비 지급

□ 사업의무

-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에 맞추어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수립된 교육계획을 해당 연도에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
- 각 교육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교육대상자 별로 정한 주요 교육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교육결과 및 집행 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교육결과의 평가·환류를 위해 교육 및 설문조사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마. 교육과정 및 범위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농가교육		○ 한우·젖소 육종농가	○ 암소검정우 유전능력 평가 ○ 계획교배를 통한 계절번식 방향 ○ 후대검정사업의 이해
컨설팅 트 교육	유우군 검정원 기술교육	○ 유우군능력 검정원	○ 계획교배를 위한 정액선택 요령 ○ 검정기록 지침 및 조사방법 교육 ○ 교육을 통한 정확한 검정자료 생성
	한우암소검정 사업단 기술교육	○ 컨설팅기관 ○ 조합지도원 ○ 일반 컨설팅트	○ 한우 암소검정사업 실시 요령 ○ 암소검정 친자확인 교육 및 활용 ○ 암소검정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전문가 교육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 개업인공수정사	○ 가축개량시책 방향 ○ 가축개량 정보보급 및 계획교배 추진 ○ 가축의 개량효과
	선형심사교육	○ 한우 및 젖소관련 기관 실무자, 농가	○ 한우 및 젖소 체척 및 심사실습 ○ 한우 및 젖소의 해부학적 이해 및 외 모심사법
	개량기관 기술교육	○ 개량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 정책방향 설명 및 토론 ○ 가축개량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 가축개량 현황 토의
축산분 야 R&D	미래축산포럼	○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전문가	○ 축산 기술과제 활용방안 마련 ○ 축산분야 기술개발 및 로드맵 작성 ○ 축산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기술개발과 제 검토 등
합 계(7개 과정)			

※ 2017년 교육실적을 감안하여 2018년 세부추진계획 통보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

- 교육기관은 기관별 지원한도액에 자부담(20%)을 포함한 교육 계획서를 마련하여 농협 가축개량원에 사업비 지급 신청(1개월 전)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미래축산포럼 운영기관은 자부담(20%) 제외

□ 자금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교육기관 사업비 지급

- 농협 가축개량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및 국립축산과학원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교육기관 자금집행

- 교육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의 항목별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3. 사후관리

가.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교육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 가축개량원은 가축개량기술교육 평가 및 환류계획과 가축개량기술교육 및 교육비 집행지침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담당자 교육실시(17.3월)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서 검토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류에 대해 교육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교육기관 결과보고
 - 각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비 정산을 위해 교육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결과 및 집행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정된 계좌로 반납
- 각 교육기관은 교육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교육결과 및 교육참석자에게 실시한 설문결과(엑셀작성)를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교육 결과의 취합·보고 및 정산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로 취합한 교육결과 및 정산내역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으로 반납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교육기관별 교육결과, 평가결과, 당해 연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성과지표	목표	산출방법	지표 설정사유
교육 참석율	80%	참석자/계획인원	사업홍보 노력도 평가
교육 만족도	80점	참석자 설문조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 평가
학습 성취도	60점	참석자 Quiz 등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

□ 교육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 제외. 단, 미래축산포럼은 평가에서 제외

1. 평가결과 교육 참석율 60% 미만
2. 교육 만족도 점수 60점 미만
3. 학습성취도 40점 미만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교육기관이 제출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교육기관에 보고·통보
- 각 교육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통보받은 교육평가 내용을 교육과정(교육내용, 일정, 강사진 등)의 질적 개선에 활용

4. 기타사항

□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18년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17.12월에 실시하는 교육 수요조사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신청
 - 교육기관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교육계획서 제출
 - 미래축산포럼은 운영을 교육계획으로 대신하며, 자부담(20%) 제외

13 신·품·종·별·보·급·용·별·통·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품·종·여·왕·별·보·급·을·통·한·양·봉·농·가·생·산·성·향·상·및·생·산·비·절·감·유·도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	-	300	300	2,100
보 조	-	-	150	150	1,050
용 자	-	-	-	-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150	150	1,050

라.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7)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여·왕·별·을·구·입·한·생·산·단·체·또·는·농·가(불·임·1)·에·별·통·구·입·비·의·50%·지·원

협조기관 등

○ 신·품·종·여·왕·별·생·산·단·체·또·는·농·가 : 신·품·종·여·왕·별·생·산·공·급(판·매)

○ 농촌진흥청 : 생·산·단·체·및·농·가·기·술·지·도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사무국

2.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 별 생산농가 또는 단체*가 생산한 여왕별(장원별)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육성한 농가 및 단체(전국 8개도 10개소) : 붙임1

나. 사업기간 : '17. 1 ~ '17. 12

다.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군당 15천원 한도), 자담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한국양봉협회

- 사업비 : 150백만원

- 30,000원/군 × 10,000군 × 50% = 150백만원

- 사업량 : 10천군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품종 여왕별 보급용 벌통 구입비용(상한 : 마리당 벌통 5개)

마.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17.1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참여 희망농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7.2월)

-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시군)에 통보

- 지자체(시·군)는 지역 내 신품종 여왕벌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17.1~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양봉농가에 지원계획 통보('17.2월)
 - 사업 대상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시·도에 통보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사업 주관기관 및 사업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봉군 관리 등 관련 교육 실시
- 신품종 생산 단체 및 농가에 생산 관련 기술 지도

사업대상자(양봉농가)

-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양봉농가는 해당 보급 농가 및 단체에 신품종 별 공급 요청
 - * 신품종 벌과 벌통을 구입하고 지자체에 증빙서류 제출
- 신품종 별 판매가격은 보급농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축발기금사무국

-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 기관에 집행

□ 정산단계

시 · 군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결과 및 정산 보고
-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 · 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사업추진상황(벌통 보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 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를 연간 1회 이상 점검

□ 제재사항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7.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 사항 등

□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17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차등 반영
- 평가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은 사업지침에 반영

장원별 증식보급시범 대표(종봉)농가 현황

대표농가 (참여농가수)	주 소	연락처
양경열(18)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부로길 110	010-5419-2045
김익수(20)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15, 2-304(삼성A)	010-5378-3030
민대식(10)	충북 음성군 시장로 26-8 유신아파트 905	010-3028-5806
김기수(11)	충남 청양군 정산면 노루목후동길 35-31	011-266-5314
윤여한(6)	경북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197-8	010-4448-0896
권재석(20)	경남 의령군 화정면 벽화로2길 119-26	011-567-6901
이병규(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77길 6	010-3839-3817
오명수(10)	전북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010-8247-2001
노세창(11)	전북 고창군 고창읍 향교길 42-1	010-9223-3103
손종인(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길 57-21	010-8788-3408

